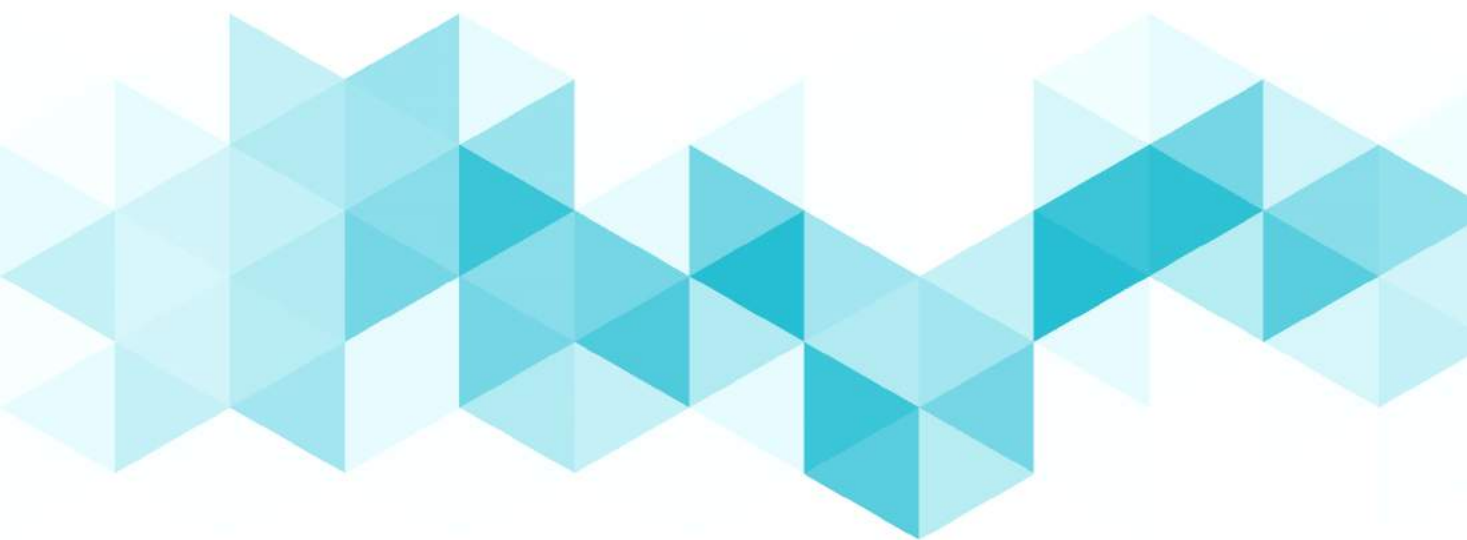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2017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7 Annual Report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3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5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중재	11
제1절	개요	11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11
	2. 중재부의 구성	12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2
	1. 청구현황	12
	2. 청구권별 현황	13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13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14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15
	6. 중재부별 접수현황	16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6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7
	1. 피해구제율 현황	18
	2. 청구권별 처리결과	18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2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3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5
	6. 중재부별 처리결과	26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27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28
제5절	평 가	29
제2장	시정권고	31
제1절	개 요	3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32
	1. 시정권고 현황	32
	2. 침해 유형별 분석	32
	3. 매체 유형별 분석	40
제3절	평 가	40
제3장	선거기사심의	42
제1절	개 요	42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42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44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6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46
	2. 2017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49
제3절	평 가	50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55
제1절	개 요	55

목차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6
	1. 상담신청 유형	56
	2. 상담 처리결과	57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8
	4. 상담매체 유형	58
	5. 상담신청인 유형	59
	6. 상담대상 유형	60
	7. 상담내용 유형	60
제3절	평 가	61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62
제1절	개 요	6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3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63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64
	3. 분쟁해결 전문연수	65
	4. 교육콘텐츠 개발	72
제3절	평 가	73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75
제1절	개 요	7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76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76
	2. 토론회 개최	81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85
제3절	평 가	85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87
제1절	개 요	87
제2절	주요 조사결과	88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88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0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91
제3절	평 가	92
제5장	홍 보	93
제1절	개 요	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4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94
	2. 위원회 매체 광고 실시 현황	95
	3. 온라인 기반의 홍보 활동 강화	96
	4. 대국민 대상 참여 홍보 활동 전개	97
	5.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99
제3절	평 가	100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01
제1절	개 요	101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101
	2. 국제컨퍼런스 협력	103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04
	4. 직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104
	5. 사회공헌활동	106

제4부 2018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제1장	2018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 요인	111
제2장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	115

부 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121
2. 설립근거 및 기능	131
3. 위원회 연혁	131
4. 기구	133
5. 2017년 예산결산 현황	135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35
7. 2017년 주요 발간물 목록	137

표 목 차

표 1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12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13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4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14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15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16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7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17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18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19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1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1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1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2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3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4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5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26
표 21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9
표 22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9
표 23	중재사건 처리결과	29
표 2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33
표 2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0
표 26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43
표 27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47
표 28	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49
표 29	상담신청 유형	57
표 30	상담 처리결과	57
표 31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8
표 32	상담매체 유형	59
표 33	상담신청인 유형	59
표 34	상담대상 유형	60
표 35	상담내용 유형	61
표 36	2017년도 교육 실시현황	63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64



제1부 총 론

제 1 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위원회는 지난 2017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및 시행 대비 철저>를 설정했다. 아울러 언론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이용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언론조정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선정했다. 또한 2017년 대통령선거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선거의 공정정보도를 위한 적극적인 기사심의>를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위 중점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및 시행 대비 철저

- 위원회는 2016년 10월 발의된 인터넷매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권리 도입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 및 법률소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대외적 사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개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가짜뉴스와 관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 연관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학술지·언론 중재 등 위원회 발간물과 토론회 등 학술행사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이용자 중심의 언론조정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펄글·넷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러한 특이사례를 별도로 정리·공유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국내외 언론 관련 판례와 학설 등을 정리한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판단 기준'을 조정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인터넷 환경에 맞는 조정중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윈도우 및 익스플로러 버전 제한으로 인한 오류를 개선하는 한편, 조정중재사무관리규칙 상 문서접수부와 사건기록부를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상 서식에 맞춰 개정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사건 취하 확인을 위한 '취하(간주)확인서' 양식을 신설하고 출석 요구서 양식을 일원화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3. 대통령선거의 공정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사심의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2013헌가8)에 따라 사과문 게재 조항을 삭제하고 경고결정문 게재 등 피해구제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2017. 2. 8.)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 2017. 2. 11. 출범한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신속히 전환하여 조기 대선에 대비하였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의 문제점과 2018년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보도심의기구 간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 언론피해구제교육 확대

-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 교육연수 시간이 인정되는 변호사 연수 과정을 신규 개설하였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소규모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대학생 연수 실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대상 교육을 확대하였다.
-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교육연수원 및 공공기관 사내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 언론분쟁과 관련해 법원 판결 경향을 분석하고 주요 판례를 수록한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계·학계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주요 언론판결 동향을 담은 뉴스레터 송부 대상을 확대하였다.

2. 언론피해구제 관련 연구 활동 강화

- 학술지 <미디어와 인권권>, 계간 <언론중재>를 통해 가짜뉴스 등 디지털 미디어와 언론법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발굴하였다.

- 탄핵 정국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었던 사법보도와 관련한 주제로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의미있는 학술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국내외 사례와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입법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미디어 환경에 맞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3. 위원회 투명성 강화 활동

- 2017년 1월, 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의 과·오집행을 방지하고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4. 대민 상담업무 효율성 강화

- 집중하는 민원인들의 폭언 및 과격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상담매뉴얼”을 제작하여 상담원들이 상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상담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상담창구 근무 직원에게 상담매뉴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상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회를 방문하는 상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5. 홍보매체 다변화 및 다양한 콘텐츠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20·30대를 대상으로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웹 드라마(오보찾아 홍신소)를 제작하여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방영하였다.
-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UCC 공모전 수상작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페이스북 광고를 실시하여 위원회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 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사람>이 한국사보협회 주관 <2017년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정기간행물협동조합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 중재

제1절 개 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법익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내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 제도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를 원칙으로 당사자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쟁 해결 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한편,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국민의 권익 의식 향상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의 증가로 인해 2000년 607건, 2010년 2,205건, 2017년 3,23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서울 8개, 지역 10개)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량사건¹⁾을 제외한 일반사건 건수는 2014년 2,931건, 2015년 3,319건, 2016년 3,170건, 2017년 3,230건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3천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표 1 |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3. 1. 1. ~ 2017. 12. 31.)

구 분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청 구 건 수	2,433	19,048 (2,931)	5,227 (3,319)	3,170	3,230
전년 대비 증감	32	16,615 (498)	-13,821 (388)	-2,057 (-149)	60

* () 안의 숫자는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건수

1)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병언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와 유 전 회장과 연관된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014년 16,117건(권윤자 11,306건, 기독교복음침례회 4,811건), 2015년 1,908건(권윤자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 698건)을 신청한 것을 의미함

2. 청구권별 현황

2017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2%로 2016년(49.1%)에 비해 0.9% 낮았지만, 여전히 전체 청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순위인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34.6%로 2016년 대비 0.9% 오른 반면, 반론보도청구 비율은 2016년 대비 1.0% 하락했다.

표 2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청구명	2015	2016	2017	합계
정정	3,098 (59.3)	1,555 (49.1)	1,557 (48.2)	6,210 (53.4)
반론	419 (8.0)	386 (12.2)	362 (11.2)	1,167 (10.0)
추후	150 (2.9)	160 (5.0)	194 (6.0)	504 (4.3)
손배	1,560 (29.8)	1,069 (33.7)	1,117 (34.6)	3,746 (32.2)
계	5,227 (100)	3,170 (100)	3,230 (100)	11,627 (1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1,842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이었다.

신문의 경우 2016년에 비해 그 비율이 18.1%에서 11.8%로 6.3% 낮아진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10.4%에서 12.9%로 2.5% 증가해, 종이신문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포털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 도		2015	2016	2017	합 계
매체유형	신문	619 (11.8)	405 (12.8)	261 (8.1)	1,285 (11.1)
	주간신문	138 (2.6)	168 (5.3)	119 (3.7)	425 (3.7)
방 송		892 (17.1)	423 (13.3)	361 (11.2)	1,676 (14.4)
잡 지		18 (0.3)	16 (0.5)	23 (0.7)	57 (0.5)
뉴스통신		264 (5.1)	165 (5.2)	206 (6.4)	635 (5.5)
인터넷신문		2,490 (47.7)	1,661 (52.4)	1,842 (57.0)	5,993 (51.5)
인터넷뉴스서비스		799 (15.3)	330 (10.4)	416 (12.9)	1,545 (13.3)
기 타		7 (0.1)	2 (0.1)	2 (0.1)	11 (0.1)
계		5,227 (100)	3,170 (100)	3,230 (100)	11,627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표 4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 도		2015	2016	2017	합 계
침해유형	명예훼손	4,891 (93.6)	2,972 (93.8)	3,060 (94.7)	10,923 (93.9)
	초상권 침해	205 (3.9)	81 (2.6)	105 (3.3)	391 (3.4)
음성권 침해		14 (0.3)		4 (0.1)	18 (0.2)
성명권 침해		10 (0.2)	19 (0.6)	18 (0.6)	47 (0.4)
사생활 침해		56 (1.1)	51 (1.6)	8 (0.2)	115 (1.0)
재산상 손해		51 (1.0)	33 (1.0)	8 (0.2)	92 (0.8)
기 타			14 (0.4)	27 (0.8)	41 (0.4)
계		5,227 (100)	3,170 (100)	3,230 (100)	11,627 (100)

* () 안의 숫자는 %

2017년 조정사건 중 제일 많은 법익 침해 유형은 명예훼손이었다. 이로 인한 청구는 3,060건(94.7%)에 달했고 이어 초상권 침해 105건(3.3%), 기타 27건(0.8%), 성명권

침해 18건(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법익 침해 사건 중에는 언론 보도에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을 이유로 청구한 사건들이 있다.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17년 조정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이 2,077건(6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업체가 424건(13.1%), 일반단체 246건(7.6%), 지자체 144건(4.5%), 교육기관 93건(2.9%), 언론사 71건(2.2%) 등의 순이었다.

이를 2016년과 비교해보면 개인, 지자체, 기업체, 교육기관은 전체 청구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공공단체, 일반단체, 종교단체, 언론사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신청인 \ 연 도	2015	2016	2017	합계
개 인	3,123 (59.7)	1,919 (60.5)	2,077 (64.3)	7,119 (61.2)
국가기관	85 (1.6)	64 (2.0)	64 (2.0)	213 (1.8)
지 자 체	117 (2.2)	90 (2.8)	144 (4.5)	351 (3.0)
공공단체	54 (1.0)	67 (2.1)	54 (1.7)	175 (1.5)
일반단체	570 (10.9)	373 (11.8)	246 (7.6)	1,189 (10.2)
종교단체	728 (13.9)	110 (3.5)	57 (1.8)	895 (7.7)
기 업 체	379 (7.3)	390 (12.3)	424 (13.1)	1,193 (10.3)
언 론 사	87 (1.7)	74 (2.3)	71 (2.2)	232 (2.0)
교육기관	84 (1.6)	83 (2.6)	93 (2.9)	260 (2.2)
계	5,227 (100)	3,170 (100)	3,230 (100)	11,627 (1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7년 전체 조정건수 3,230건 중 2,371건(73.4%)은 서울 8개 중재부가, 859건(26.6%)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중재부 내에서는 경기중재부의 접수 건수가 343건(10.6%)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어 대구중재부 114건(3.5%), 광주중재부 82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 도 중재부	2015	2016	2017	합 계
서울중재부	4,225 (80.8)	2,266 (71.5)	2,371 (73.4)	8,862 (76.2)
부산중재부	78 (1.5)	110 (3.5)	54 (1.7)	242 (2.1)
대구중재부	80 (1.5)	73 (2.3)	114 (3.5)	267 (2.3)
광주중재부	214 (4.1)	163 (5.1)	82 (2.5)	459 (3.9)
대전중재부	84 (1.6)	66 (2.1)	71 (2.2)	221 (1.9)
경기중재부	259 (5.0)	183 (5.8)	343 (10.6)	785 (6.8)
강원중재부	42 (0.8)	15 (0.5)	29 (0.9)	86 (0.7)
충북중재부	71 (1.4)	50 (1.6)	42 (1.3)	163 (1.4)
전북중재부	78 (1.5)	55 (1.7)	68 (2.1)	201 (1.7)
경남중재부	62 (1.2)	145 (4.6)	41 (1.3)	248 (2.1)
제주중재부	34 (0.7)	44 (1.4)	15 (0.5)	93 (0.8)
계	5,227 (100)	3,170 (100)	3,230 (100)	11,627 (100)

* () 안의 숫자는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한 사건이 2,236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위원회의 전자조정중재 홈페이지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725건(22.4%), 방문 접수가 189건(5.9%), 우편 접수가 74건(2.3%)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정사건 중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접수한 사건(전자우편 및 전자문서 접수)이 전체의 91.6%를 차지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신청인들이 보다 손쉬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계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1)	2 (0.1)	5,227 (100)
2016	302 (9.5)	114 (3.6)	2,265 (71.5)	488 (15.4)	1 (0.1)		3,170 (100)
2017	189 (5.9)	74 (2.3)	2,236 (69.2)	725 (22.4)	6 (0.2)		3,230 (1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총 3,230건의 2017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486(46.0%), 조정성립 915건(28.3%), 조정불성립결정 488건(15.1%), 직권조정결정 133건(4.1%), 기각 122건(3.8%), 각하 86건(2.7%) 순이었다.

한편, 각하 결정이 86건으로 2016년(19건)보다 67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신청인이 신청요건이 부적법한 사건을 다량으로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5. 1. 1. ~ 2017. 12. 31.)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	30.3	5.7	3.7	13.1	3.4	0.6	43.1	
2017	3,230	915	72	61	488 (6)	122	86	1,486 (1,234)	73.7%
	%	28.3	2.2	1.9	15.1	3.8	2.7	46.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 보도 등을 의미함

1.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요건이 적합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7년 피해구제율은 73.7%로 2016년 피해구제율(72.3%)에 비해 1.4% 상승하였다. 작년 취하 사건 1,366건(43.1%) 중 76.8%가 피해구제된 것에 비해 올해 전체 처리결과의 46.0%(1,486건)를 차지하는 취하 사건 중 83%가 피해구제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5	5,227	354	4,873	3,797	77.9%
2016	3,170	127	3,043	2,201	72.3%
2017	3,230	208	3,022	2,227	73.7%

2.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1.3%, 반론보도청구 27.6%, 추후보도청구 11.3%, 손해배상청구 27.4%로, 2016년(정정보도청구 30.8%, 반론보도청구 32.4%, 추후보도청구 20.0%, 손해배상청구 30.4%)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소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후보도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취하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다른 청구 사건에 비해 높은 편인데(77.8%) 이는 신청인이 추후보도청구에 필요한 요건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조정 심리 이전에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표 10 |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1,557 (100)	487 (31.3)	74 (4.8)	237 (15.2)	52 (3.3)	38 (2.4)	669 (43.0)
반론	362 (100)	100 (27.6)	17 (4.7)	48 (13.3)	35 (9.7)	4 (1.1)	158 (43.6)
추후	194 (100)	22 (11.3)	2 (1.0)	3 (2.5)	1 (0.5)	15 (7.7)	151 (77.8)
손배	1,117 (100)	306 (27.4)	40 (3.6)	200 (17.9)	34 (3.0)	29 (2.6)	508 (45.5)
계	3,230 (100)	915 (28.3)	133 (4.1)	488 (15.1)	122 (3.8)	86 (2.7)	1,486 (46.0)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정정보도

A언론사는 신청인이 조기영어교육의 폐해로 우리말 교정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 어순 교정 수업을 듣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발표력 향상 수업을 받았을 뿐 한국어 어순 교정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이 가수 겸 배우인 연예인을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확정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추후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직 시 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1

D언론사는 신청인이 대학 교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패널을 들고 졸업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성명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D언론사는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2

E언론사는 생리대 안정성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게에서 생리대를 고르는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E언론사는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 보도사진을 교체수정하고, 손해배상액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 처리현황

1,117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306건(27.4%), 직권조정결정 40건(3.6%), 조정불성립결정 200건(17.9%), 기각 34건(3.0%), 각하 29건(2.6%), 취하 508건(45.5%)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612] (44.4)
2016	1,069 (100)	325 (30.4)	66 (6.2)	35[2] (3.3)	144 (13.5)	35 (3.3)	5 (0.5)	459[359] (42.9)
2017	1,117 (100)	306 (27.4)	24 (2.1)	16 (1.4)	200[2] (17.9)	34 (3.0)	29 (2.6)	508[421] (45.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2017년 손해배상청구 1,117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83건으로 7.4%이지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원 조정대상기사 삭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건수는 753건 (67.4%)이었다.

표 12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5. 1. 1. ~ 2017.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5	1,210	100	8.3%
2016	1,069	70	6.5%
2017	1,117	83	7.4%

* 2015년은 전체사건 중 대량사건(구원파 관련)을 제외함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청구액은 최고 108억 원이었으며 최저액은 0원²⁾이었다.

조정액 최저액은 1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1,000만 원이었다. 최고액 1,000만 원은 위원회에서 조정성립으로 해결된 손해배상 금액 중 신청인 한 명이 단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받은 최고액이다(2016년도 최고액 3,000만 원은 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정액 평균액은 130여 만 원으로 작년 220여 만 원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했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5. 1. 1. ~ 2017. 12. 31. / 단위: 원)

연 도 \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2016	100,000	10,786,381,412	113,115,649	20,000,000
2017	0	10,800,000,000	112,446,512	20,000,000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5. 1. 1. ~ 2017. 12. 31. / 단위: 원)

연 도 \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2016	10,000	30,000,000	2,235,000	1,000,000
2017	100,000	10,000,000	1,369,737	1,000,000

표 15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7. 1. 1. ~ 2017.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4	100,000	7,000,000	2,027,273	1,25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50	300,000	10,000,000	1,097,872	7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1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성명권 침해	3	200,000	2,000,000	800,000	200,000	200,000
사생활 침해	2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재산상 손해	1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기타	2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 2017서울조정21682169 사건: 배상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피해구제가 되는 날까지 매일 1원씩을 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 심리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 간주로 종결됨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7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117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983건(8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 86건(7.7%), 성명권 침해 17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 유형별 처리 결과를 보면 88%를 차지한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금액이 지급된 경우가 24건에 그친 반면, 초상권 침해 사건의 경우 전체 86건 중 50건(58.1%)이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신청인이 조정 심리를 통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반면, 초상권, 사생활, 음성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청인에 대한 법익 침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등과 병합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나 기사 수정 등의 형태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해 실제 금액지급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표 16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983 (100)	249 (25.3)	30 (3.1)	184 (18.7)	30 (3.1)	26 (2.6)	464 (47.2)
초상권 침해	86 (100)	40 (46.5)	4 (4.7)	5 (5.8)	3 (3.5)	3 (3.5)	31 (36.0)
음성권 침해	4 (100)	2 (50.0)	1 (25.0)				1 (25.0)
성명권 침해	17 (100)	5 (29.4)	2 (11.8)	7 (41.2)			3 (17.6)
사생활 침해	8 (100)	4 (50.0)		1 (12.5)			3 (37.5)
재산상 손해	2 (100)		1 (50.0)				1 (50.0)
기타	17 (100)	6 (35.3)	2 (11.8)	3 (17.6)	1 (5.9)		5 (29.4)
계	1,117 (100)	306 (27.4)	40 (3.6)	200 (17.9)	34 (3.0)	29 (2.6)	508 (45.5)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주간신문 47.1%, 일간신문 40.6%로 신문 매체의 조정성립률이 가장 높았고 방송도 34.1%로 타 매체에 비해 높은 조정성립

를 보였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지면 및 프로그램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피신청인이 지면 혹은 방송 시간의 제약을 이유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를 희망하는데 신청인 역시 인터넷을 통해 보도하는 것이 일반 독자(시청자) 입장에서 피해구제보도문의 접근성에 용이하기 때문에 상호간 의견이 합치되어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아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취하 비율이 각각 50.7%, 56.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신청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기사가 삭제되기를 원하고, 피신청인 역시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이행하면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7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 문	일간신문	261 (100)	106 (40.6)	9 (3.4)	52 (19.9)	5 (1.9)	1 (0.4)	88 (33.7)
	주간신문	119 (100)	56 (47.1)	9 (7.6)	28 (23.5)	2 (1.7)	2 (1.7)	22 (18.5)
방 송		361 (100)	123 (34.1)	21 (5.8)	96 (26.6)	8 (2.2)	5 (1.4)	108 (29.9)
잡 지		23 (100)	7 (30.4)		8 (34.8)		1 (4.3)	7 (30.4)
뉴스통신		206 (100)	54 (26.2)	12 (5.8)	28 (13.6)	9 (4.4)	10 (4.9)	93 (45.1)
인터넷신문		1,842 (100)	485 (26.3)	67 (3.6)	235 (12.8)	61 (3.3)	60 (3.3)	934 (50.7)
인터넷 뉴스서비스		416 (100)	82 (19.7)	15 (3.6)	41 (9.9)	37 (8.9)	7 (1.7)	234 (56.3)
기 타		2 (100)	2 (100)					
계		3,230 (100)	915 (28.3)	133 (4.1)	488 (15.1)	122 (3.8)	86 (2.7)	1,486 (46.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명예훼손 사건 3,060건 중 1,419건(46.4%)이 취하로 처리되었고, 그 다음으로 847건(27.7%)이 조정성립, 471건(15.4%)이

조정불성립결정, 123건(4.0%)이 직권조정결정 등으로 처리되었다.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의 경우 조정성립으로 종결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피해 여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많다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침해 유형을 기타로 분류한 사건 중 모욕으로 인한 청구 2건은 피신청인의 유감표명으로 조정성립되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건 중 2건은 중재부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직권으로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표 18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3,060 (100)	847 (27.7)	123 (4.0)	471 (15.4)	118 (3.9)	82 (2.7)	1,419 (46.4)
초상권 침해	105 (100)	47 (44.8)	4 (3.8)	5 (4.8)	3 (2.9)	3 (2.9)	43 (41.0)
음성권 침해	4 (100)	2 (50.0)	1 (25.0)				1 (25.0)
성명권 침해	18 (100)	5 (27.8)	2 (11.1)	7 (38.9)			4 (22.2)
사생활 침해	8 (100)	4 (50.0)		1 (12.5)			3 (37.5)
재산상 손해	8 (100)	2 (25.0)	1 (12.5)				5 (62.5)
기 타	27 (100)	8 (29.6)	2 (7.4)	4 (14.8)	1 (3.7)	1 (3.7)	11 (40.7)
계	3,230 (100)	915 (28.3)	133 (4.1)	488 (15.1)	122 (3.8)	86 (2.7)	1,486 (46.0)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명예훼손

F언론사는 방송인인 신청인이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낙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원 보도가 허위이며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고 위법성을 인정,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과 함께 정정보도 등을 권유,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건을 청구한 개인의 경우 총 2,077건 중 1,072건(51.6%)이 취하로 종결되었고, 479건(23.1%)이 조정성립으로, 284건(13.7%)이 조정불성립결정, 67건(3.2%)이 직권조정결정, 94건(4.5%)이 기각, 81건(3.9%)이 각하로 마무리되었다.

처리결과 중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의 비율이 높은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교육기관, 일반단체, 종교단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국가기관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64.1%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사가 신청한 사건의 경우, 63.4%가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언론사간의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구 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 인	2,077 (100)	479 (23.1)	67 (3.2)	284 (13.7)	94 (4.5)	81 (3.9)	1,072 (51.6)
국가기관	64 (100)	41 (64.1)	7 (10.9)	3 (4.7)			13 (20.3)
지자체	144 (100)	51 (35.4)	10 (6.9)	35 (24.3)	1 (0.7)	2 (1.4)	45 (31.3)
공공단체	54 (100)	18 (33.3)	3 (5.6)	4 (7.4)			29 (53.7)
일반단체	246 (100)	109 (44.3)	12 (4.9)	39 (15.9)	8 (3.3)		78 (31.7)
종교단체	57 (100)	21 (36.8)	1 (1.8)	19 (33.3)			16 (28.1)
기업체	424 (100)	133 (31.4)	29 (6.8)	49 (11.6)	19 (4.5)	1 (0.2)	193 (45.5)
언론사	71 (100)	17 (23.9)	4 (5.6)	45 (63.4)		2 (2.8)	3 (4.2)
교육기관	93 (100)	46 (49.5)		10 (10.8)			37 (39.8)
계	3,230 (100)	915 (28.3)	133 (4.1)	488 (15.1)	122 (3.8)	86 (2.7)	1,486 (46.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전체 3,230건 중 73.4%에 해당하는 2,371건을 서울중재부가 처리했는데 이 중 1,095건(46.2%)은 취하로, 627건(26.4%)은 조정성립으로, 338건(14.3%)은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의 청구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처리결과 중 취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50.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조정성립(36.2%), 그 다음으로 조정불성립결정(12.0%) 등의 순이었다.

표 20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구 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서 울	2,371 (100)	627 (26.4)	121 (5.1)	338 (14.3)	112 (4.7)	78 (3.3)	1,095 (46.2)
부 산	54 (100)	10 (18.5)	3 (5.6)	8 (14.8)	2 (3.7)		31 (57.4)
대 구	114 (100)	54 (47.4)		18 (15.8)			42 (36.8)
광 주	82 (100)	30 (36.6)		25 (30.5)	2 (2.4)		25 (30.5)
대 전	71 (100)	5 (7.0)	1 (1.4)	19 (26.8)	1 (1.4)	3 (4.2)	42 (59.2)
경 기	343 (100)	124 (36.2)	1 (0.3)	41 (12.0)	1 (0.3)	4 (1.2)	172 (50.1)
강 원	29 (100)	8 (27.6)		2 (6.9)			19 (65.5)
충 북	42 (100)	15 (35.7)		13 (31.0)			14 (33.3)
전 북	68 (100)	22 (32.4)	2 (2.9)	12 (17.6)	2 (2.9)		30 (44.1)
경 남	41 (100)	14 (34.1)	3 (7.3)	6 (14.6)	2 (4.9)		16 (39.0)
제 주	15 (100)	6 (40.0)	2 (13.3)	6 (40.0)		1 (6.7)	
계	3,230 (100)	915 (28.3)	133 (4.1)	488 (15.1)	122 (3.8)	86 (2.7)	1,486 (46.0)

* () 안의 숫자는 %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의 언론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양한 신생 매체들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유통되는 뉴스양도 증가했으며 잘못된 기사의 복제와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복제기사와 댓글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의사와 실현 가능한 피해구제 방안이 있을 시에는 원활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복제기사와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방안은 인터넷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 기사의 수정과 보완, 정해진 기간 동안 기사나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 조치 등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의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사건 조정 시 당사자에게 보다 나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 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1



E언론사는 취업년에 졸업앨범 대신 기념사진으로 대체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해당 내용과 관계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했고, 이 보도는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다.

심리결과 E언론사가 신청인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포털의 기사는 노출·검색 차단하는 것으로 피해가 구제되었다.

사 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2

C언론사는 신청인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이 영상은 포털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범죄 혐의 단계에 불과한 사건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해 추후보도와 함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포털 및 유튜브의 복제 영상들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당사자 양쪽이 언론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신청하는 중재사건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가 미진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중재제도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달리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사전에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IPTV 등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재신청은 2015년 26건, 2016년 13건, 2017년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된 경우 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중재사건이 이어졌으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 결과가 포털에 그대로 반영되는 추세여서 신청인이 별도로 포털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줄었고 그에 따라 중재 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중재사건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조정신청을 통해 반론보도를 청구했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중국적으로 중재부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중재로 전환한 사건이다. 다만, 중재부의 중재결정 이전에 당사자 간 기사를 삭제하고 부제소를 약속하는 내용의 화해서가 제출되어 중재화해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표 21 |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7. 1. 1. ~ 2017. 12. 31.)

연 도	구 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17		명예훼손	1		1		
		계	1		1		

표 22 |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7. 1. 1. ~ 2017. 12. 31.)

연 도	구 분	계	신문·잡지	방송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2017		1	1				

표 23 | 중재사건 처리결과

(2017. 1. 1. ~ 2017.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7		1		1			

사 례 | 중재

A신문은 여중생인 신청인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폭행이 아니라고 했던 사안이고, 가정법원에서도 심리불개시결정한 사건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가 A신문과 사전에 중재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고 중재로 사건을 전환하였다.

이후 중재부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사자 간에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만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는 문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중재화해결정을 내렸다.

제5절 평 가

2017년 위원회는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피해구제율은 73.7%를 기록하였다.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2,931건, 2015년 3,319건, 2016년 3,170건, 2017년 3,230건으로 4년 연속 3천 건 안팎의 건수를 처리하였다.

‘201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각각 신청인 86.4점, 피신청인 77.6점으로 2016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올해 처리한 3,230건 중 2,258건(69.9%)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데 이 중에서는 원 조정대상보도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확산·전파 되어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를 중심으로 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복제, 전파된 기사에 대한 조치를 담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부각됨에 따라 언론사들이 기존의 온라인 홈페이지 외에 자사 뉴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SNS 계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률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형태의 뉴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는 주요 언론사의 뉴스 플랫폼 및 SNS 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뉴스 전파 방식 및 댓글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언론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수 방송사들은 매체 특성상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유튜브 계정과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 플랫폼 운영과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조정신청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22일 정도로 나타났는데 2012년 서울 1개 중재부 증설 이후 2013년 한 해 처리기간이 약 14일이었으나, 이후로는 사건이 급증하여 수년 간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8년 법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관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당사자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언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고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이다.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보도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한 언론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기능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17년 위원회는 전년도 912건에서 122건 증가한 1,034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여 시정권고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1,000건 이상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유형이 280건, 사생활 침해 유형이 21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와 비중이 전년보다 더욱 커졌다(2016년 698건 76.5%, 2017년 878건 84.9%). 위원회는 올해 총 2,193개 매체를 심의하여 지면매체(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96건, 뉴스통신 47건, 인터넷신문 878건, 방송 13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2. 침해 유형별 분석

2017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280건(27.1%)의 시정권고를 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사생활 침해 등 217건(21%), 기사형 광고 198건(19.1%) 순이었다.

피의자의 신원 공개 유형의 경우 시정권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예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보도에서 연예인이 아닌 일반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유형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2016년 134건, 2017년 217건). 2017년 위원회는 기업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84건(8.1%), 형사사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보도에 대해 70건(6.8%),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한 보도에 대해 70건(6.8%), 음란·포악·잔인성이 담긴 범죄 수단 또는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한 보도 57건(5.5%)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한편 시정권고 건수는 많지 않으나 개인적·사회적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정권고 유형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대한 공적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 결과를 단정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한 보도에 대해 보도윤리 조항(시정 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으로 3건,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도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조항(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 위반으로 27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있었다.

표 24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등 묘사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복합 이타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음란 포악 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기타 형광	
2015	438 (100)	92 (21.0)		5 (1.1)		1 (0.2)			10 (2.3)				16 (3.7)	8 (1.8)	62 (14.2)	135 (30.8)		14 (3.2)	95 (21.7)	
2016	912 (100)	134 (14.7)		43 (4.7)	4 (0.4)	262 (28.7)	20 (2.2)		4 (0.4)	75 (8.2)		4 (0.4)	22 (2.4)	5 (0.5)	124 (13.6)	28 (3.1)		14 (1.5)	173 (19.0)	
2017	1,034 (100)	217 (21)	4 (0.4)	280 (27.1)	70 (6.8)			27 (2.6)	5 (0.5)	2 (0.2)	3 (0.3)	57 (5.5)	2 (0.2)	1 (0.1)	84 (8.1)	13 (1.3)	1 (0.1)	70 (6.8)	198 (19.1)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유형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5년 92건, 2016년 134건, 2017년 2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올해 위원회는 기업인,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보도, 사건·사고 보도에서 피해자의 초상, 주소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명 기업인의 병상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아래 [사례] 참조). 위원회는 해당 유명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병상 모습과 건강 상태를 보도한 것은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2건의 재심청구를 처리하였다. 첫 번째 재심청구(2017재심1)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위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개한 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재심청구인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형법상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보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보도활동이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취득과정, 자료 공개의 목적과 경위,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두 번째 재심청구(2017재심2)는 유명 언론인의 자택 주소 및 내부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사생활 침해로 근거로 시정권고가 결정된 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재심 청구인은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재산 현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생활 보호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례 | 사생활 침해



신경외과 전문의
식물인간인 경우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자극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 유명 기업인의 병상 모습을 공개하고 건강 상태를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는 보도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나.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80건으로, 전년도 4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연예인이 연루되어 크게 이슈가 된 형사 사건에서 일반인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된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형사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 공개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성명, 초상 등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 초상, 피의자가 과거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 등을 공개한 보도에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다. 위원회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과거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본인의 신원정보 등을 공개하였을지라도 현재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하므로 신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 례 | 피의자 신원공개



▲과거 [] 에 출연했던 [] 씨

- 피의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는 보도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적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다.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2017년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70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은 피해자 또는 제보자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기준의 관련 법률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피해자 또는 고발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심의기준 및 관련 법률의 취지가 신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지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 례 | 형사사건 신고자 신원공개

(전략) ○○경찰청은 이날 “○○○구 모텔에 투숙해 숨어있던 ○○을 ○○경찰서 강력팀이 검거했으며, ○○경찰서가 이들을 넘겨받아 데려왔다”고 밝혔다. (중략) ○○씨 등은 지난달 ○○모텔에 투숙해, 검거될 때까지 이곳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업주는 ○○씨 일행이 짐을 싸서 숙소를 나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이하 생략)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2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위원회는 음란, 포악, 잔인한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한 57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인 사

례로는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선정적인 자료사진이나 삽화를 사용한 보도, 폭력 또는 살인사건 등의 범죄 수단 또는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 수단 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경찰이나 목격자 등에 의해 공개되었을지라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 례 |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전략) 그 골목에 A를 무릎 꿇게 만든 다음에 발로 A의 얼굴을 밟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이걸로 밟으면 안 아프겠지"하면서 제 운동화를 뺏아서 그걸로 사정없이 밟았어요. (중략) A에게 침 뱉고, 담배 피던 걸 등애다 꽃기도 했어요. 피로 범박된 걸 사진을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그렇게 한 시간 넘게 밟은 것 같아요.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중략) A가 정신을 잃고 눈이 풀렸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다며 전부 말렸어요. 그런데 어떤 언니가 "아직 정신은 있네. 그냥 밟은 기억도 일게 만들자며 계속 폭행을 했어요. 언니들끼리 '이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겠냐'며 밟았어요. 일자로 누우라거나 엎드려뺏쳐 해봐라, 고개는 들고 있으라는 말도 했어요. 언니들은 성적인 말도 했어요.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 그거 하면 풀어주겠다'고도 했거든요. A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또 때렸어요. (이하 생략)

※ 폭력사건 목격자의 진술 녹취 내용을 공개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서는 녹취 전문이 적시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녹취 내용 일부를 생략함

마. 자살 관련 보도

위원회는 84건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특정인의 자살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자살자 및 유가족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자살 방법, 자살에 대한 자세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위원회는 주로 자살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언론 노출을 거부하는 유족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와 유족의 성명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한 보도(아래 [사례] 참조)와 자살 미수자의 나이, 이력 등을 공개하고 충분치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아래 [사례] 참조)가 있다.

사 례 | 자살자 및 유족 신원 공개

○○○씨가 투신자살했다. 숨진 ○○○씨의 유족들은 빈소를 마련하고 이 시간 현재 가까운 가족 친지 조문만 받고 있다. 유족들은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 조문객의 조문을 차단하고 있다. (중략) 유족으로는 미망인 ○○○씨와 ○○씨, ○○씨 그리고 ○○씨가 있다.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사 례 | 자살 동기 단정

‘4개월 인턴’ 도돌이 치렀나, 장애인 청년 안타까운 선택

(전략) A씨(XX)가 건물 앞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중략) 동료들 사이에서는 평소 A씨가 장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이 나왔다. (중략) 한 직장 동료는 “(중략) 평소 ‘XX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왔다”고 했다. (이하 생략)

※ ‘X’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바. 충격·혐오감

위원회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70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잔인하거나 비참한 내용을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빈번하게 보도하는 매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해당 언론사가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 례 | 충격·혐오감을 주는 보도

4년 전처럼 불에 탄 고양이 발견...제보자에 현상금 500만원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창고 인근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중략) 누군가 인화성 물질을 길고양이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이하 생략)



학대로 추정되는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 [사진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 원 보도내용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사. 기사형 광고

2017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건수는 198건이었다. 2015년 기사형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광고성 내용이 기사의 형태로 작성됨으로써 언론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주소, 연락처, 진경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게재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 례 | 기사형 광고

척추치료 양·한방 협진시스템 도입

병원 신사옥 이전

병원이 규모가 더 커지고, 치료만족도를 더 높이는 병원으로 거듭난다.

병원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사옥 이전은 1999년 이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지하 7층, 지상 15층인 신사옥은 연면적이 이전 사옥 약 1.6배다. 137개 입원 병상을 갖췄고, 중증 특수 클리닉 등이 마련됐다. 예약·검사·치료·입원까지 하루에 진행되며, 저녁 8시까지 야간진료가 실시된다.

의료재단 설립자는 “보다 나은 인프라와 의료서비스가 치료 효과·만족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확장 이전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신사옥 이전과 함께 척추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척추치료는 ‘수술’에서 ‘비수술’로, 최근에는 ‘비수술’에서 ‘한방 통합치료’로 변화하고 있다. 병원은 이에 발맞춰 이번 신사옥에서 한·양방 한자리 협진시스템을 갖췄다.

한방재활의학과·양방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 의료진이 MRI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진단과 치료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통합의료시스템이다. 병원은 신사옥 개원 이후 11월 말부터 2개월간 협진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예약을 통해 30분 정도 협진 진료를 주1회 받을 수 있다.

병원장은 “한자리 진료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고, 요청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도 확대된다. 1개층 전체가 진료실로 구성됐고, 영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베크어 등 총 7개국 통역서비스가 지원된다. 병원은 연평균 외국인 초진 환자를 지난해 2000여명에서 2020년에 3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자

※ 원 보도내용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3. 매체 유형별 분석

2017년 시정권고 결정 결과를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878건(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82건(7.9%), 뉴스통신 47건(4.5%), 방송 13건(1.3%), 주간지 12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5. 1. 1. ~ 2017.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2016	912 (100)	54 (5.9)	63 (6.9)	8 (0.9)	3 (0.3)	69 (7.6)	698 (76.5)	17 (1.9)
2017	1,034 (100)	41 (4.0)	41 (4.0)	12 (1.2)	2 (0.2)	47 (4.5)	878 (84.9)	13 (1.3)

※ () 안의 숫자는 %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2015년 297건(67.8%), 2016년 698건(76.5%), 2017년 878건(84.9%)으로 시정권고 건수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신문은 지면, 방송 매체에 비하여 매체수가 월등히 많으며, 보도의 확산이 빨라 특정 인터넷신문에서 법익침해보도가 발생할 시 이를 인용하여 다른 인터넷신문에서도 동일한 법익침해보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간지를 제외한 지면매체, 뉴스통신, 방송 매체의 시정권고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제3절 평 가

2017년 위원회는 역대 가장 많은 1,034건의 시정권고를 하여 1981년 시정권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이 넘는 법익침해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신문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신문은 지면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매체수가 많고 기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위원회는 기업인, 연예인 등 유명인이 관련된 보도에 대해 많

은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유명인이 연루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법익침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터넷신문에서 동일한 법익침해가 발생해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침해 유형별로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신원공개 보도유형이 280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생활 침해 보도 유형이 217건(2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기업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보도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보도에서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언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법익 침해에서는 기사형 광고가 198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관련 보도 84건(8.1%),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보도가 57건(5.5%)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형 광고는 보도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27건, 2.6%), 보도 윤리(3건, 0.3%) 등 건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의 우려가 큰 보도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가 878건(84.9%)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전년도 698건에 비해 180건 증가하였으며, 시정권고 비중은 전년도 76.5%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한편 주간지를 제외한 지면매체, 뉴스통신, 방송매체의 시정권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법익침해보도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신문은 시정권고심의 대상이 되나, 포털사이트 자체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권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가 주요한 뉴스 소비 통로가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또한 시정권고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 요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상설기구인 선심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재보궐선거는 통상 연 1회 실시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없는 때에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에 대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수준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 제재조치들은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두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는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 결정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후 선거기사심의의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성명	주요 이력	추천기관	비고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심의위원장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양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자유한국당	
김 당	(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편집주간, 부사장	국민의당	
박철규	명지대 초빙교수	바른정당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언론학회	
강신업	(전)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2016년 선거기사심의위원
김화성	(전)동아일보 부국장	한국신문협회	2016년 선거기사심의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실무팀 및 선거기사 모니터링 요원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한 후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하여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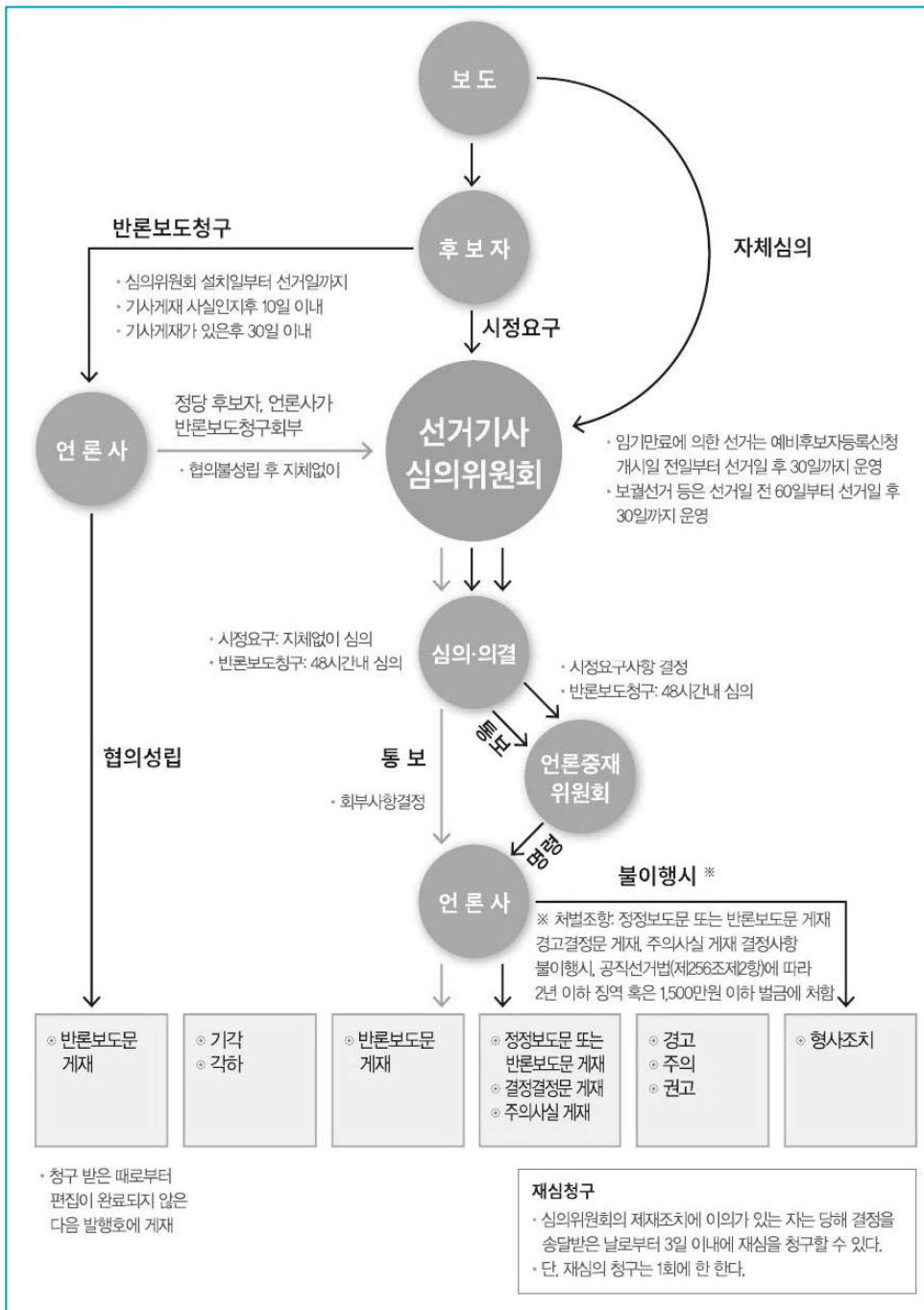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당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심의·의결 흐름도]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에 따라 궐위에 의한 선거로 실시되었다. 통상 대통령선거 선심위 운영기간은 271일이지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2017년 3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81일간 운영되었다. 선심위는 이 기간동안 자체심의 9건, 시정요구심의 1건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가. 자체심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9건의 자체심의 결정을 하였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권고가 4건(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가 3건(33.3%), 경고가 2건(22.2%)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에 대한 제재가 5건(55.6%), 광고 제한 위반 3건(33.3%),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건(11.1%)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가장 많은 4건(44.5%)이었고, 이어 종합주간지 3건(33.3%), 중앙일간지 2건(22.2%) 순이었다.

표 27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7. 3. 20. ~ 2017. 6. 8.)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2	1		1				1	1
	지역	4	3		1				2	2
종합주간지		3	1	1	1			2		1
지역주간지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총 계		9	5	1	3	0	0	2	3	4
		(100.0)	(55.6)	(11.1)	(33.3)	(0.0)	(0.0)	(22.2)	(33.3)	(44.5)

※ () 안의 숫자는 %

나. 시정요구심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는 중앙일간지의 칼럼에 대해 1건의 시정요구가 접수되었다. 시정요구인은 해당 칼럼이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요구심의를 신청하였다. 선심위가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경고 결정을 하였다.

사 례 | 광고 제한 위반(권고 조치)



- ▶ 경향신문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특정 출마예정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서광고를 게재하여 권고 결정을 받았다.

2. 2017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7년에는 4월 12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이 중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는 심의·의결한 안건이 없었다. 2017년 4월 12일 실시 재보궐선거는 상주·군위·의성·청송, 하남, 포천 등 총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구: 총 30개]

국회의원(1)	경북 상주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기초단체장(3)	경기 하남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광역의원(7)	대구 수성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포천시, 경남 양산시 경남 남해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 해남군
기초의원(19)	부산 강서구가, 대구 달서구사, 충남 천안시나, 충남 천안시마, 충남 천안시바, 전북 완주군라, 전남 여수시나, 전남 순천시나, 경북 구미시사, 경북 군위군가, 경북 칠곡군나, 경남 김해시가, 경남 김해시바, 경남 거제시마, 경남 함안군라, 경남 창녕군나, 경남 양산시마, 경남 하동군나, 경남 합천군나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구: 총 4개]

광역의원(1)	서울 구로구
기초의원(3)	경기 하남시가, 전북 전주시마, 경남 창녕군가

선심위는 2017년 4월 12일 실시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7. 2. 11. ~ 2017. 5. 12.) 동안 자체심의 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없었다.

자체심의 결과 경고가 5건, 주의가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2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4건, 지역주간지가 3건, 뉴스통신이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표 28 | 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7. 2. 11. ~ 2017. 5. 12.)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중앙	0								
신문	지역	4	3	1				3	1	
종합주간지		0								
지역주간지		3	3					1	2	
월간지		0								
뉴스통신		1		1				1		
총 계		8	6	2	0	0	0	5	3	0
		(100.0)	(75.0)	(25.0)	(0.0)	(0.0)	(0.0)	(62.5)	(37.5)	(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평 가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심위 제재조치 중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사과문 게재’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모든 제재조치들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규정 개정을 반영한 「선거기사심의편람」을 발간하여 선거기사 심의대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등의 다양한 제재조치의 공직선거법 명문화로 향후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궐위에 의한 선거로 치러져 탄핵이 결정되고 약 2달 만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사심의팀은 조기대선 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원 위촉, 인력, 예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 중이었던 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대통령선거 선심위로 전환하고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사 심의를 병행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419개 매체를 심의하여 자체심의 9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제재결정을 내렸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건수(47건)에 비하면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심위 운영기간이 271일이지만 제19대 대선 선심위는 조기 대선에 따라 운영기간이 81일로 축소되었고,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심의가 2016년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운영 후,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성행한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이 생산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 가짜뉴스로 인한 안전은 없었으나, 타 선거보도심의기구와 협력하여 향후 선거보도 관련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사심의팀은 2017년 12월 5일 선거보도심의기구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심의를 결산평가하는 한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도 심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짜뉴스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 초기에 신속히 제재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빅데이터 보도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선거보도 형태를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선거보도심의기구 간 통일된 심의·의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심위 운영기간 중에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2,965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디지털매체환경으로 인한 피해의 일괄구제를 고려한 상담체계를 확립하는 등 상담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민원인들은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실시간 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언론조정 절차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타기관 또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였다.

최근 상담신청인들이 인터넷미디어에 의한 언론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취지나 신청이유에 조정대상기사의 ‘노출 및 검색차단’을 요구하는 취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언론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공적 인물의 범위, 범죄보도시 유의사항 등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여 정리한 법리와 판례를 안내함으로써 더욱 심도있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유사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뉴스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상담이용자들의 피해양상이 복잡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신청 내용 중 이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중요상담사례들을 정리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였다.



[언론피해 상담 모습]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상담신청 유형

2017년 전체 상담 건수는 2,965건으로 2016년 2,780건에 비해 185건(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상담이 2,347건(7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신문고 259건(8.7%), 방문 144건(4.9%), 인터넷 게시판 80건(2.7%), 이메일 75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담신청이 2017년 259건으로 2016년 123건에 비해 136건 증가하였고, 이메일을 통한 상담은 2016년 52건에서 2017년 75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9 | 상담신청 유형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15	2,545 (100)	2,117 (83.2)	190 (7.5)	67 (2.6)	48 (1.9)	35 (1.4)	-	88 (3.5)
2016	2,780 (100)	2,211 (79.5)	197 (7.1)	44 (1.6)	91 (3.3)	52 (1.9)	123 (4.4)	62 (2.2)
2017	2,965 (100)	2,347 (79.2)	144 (4.9)	47 (1.6)	80 (2.7)	75 (2.5)	259 (8.7)	13 (0.4)

※ () 안의 숫자는 %

※ 2016년 5월부터 '기타'에 포함되었던 '국민신문고'를 분리해 집계

2. 상담 처리결과

2017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2,821건(6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상담 예정 522건(12.8%), 타기관 안내 461건(11.3%), 법적절차 안내 193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적절차 안내 항목은 전년 대비 2017년 193건으로 65건 늘었다. 이는 상담신청인들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뿐만 아니라 조정 성립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 조정절차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소송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0 | 상담 처리결과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처리결과 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2015	2,545	3,291 (100)	2,225 (67.6)	140 (4.3)	477 (14.5)	307 (9.3)	67 (2.0)	75 (2.3)
2016	2,780	3,639 (100)	2,464 (67.7)	128 (3.5)	526 (14.5)	393 (10.8)	99 (2.7)	29 (0.8)
2017	2,965	4,066 (100)	2,821 (69.4)	193 (4.7)	522 (12.8)	461 (11.3)	28 (0.7)	41 (1.0)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7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신청해 온 피해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이 2,471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185건(6.2%), ‘사생활 침해’ 40건(1.3%), ‘재산상 손해’ 43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자의 보도 불만 제기 등의 기타 상담 비중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대표적인 언론 관련 고충처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표 31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피 해 유 형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5	2,545 (100)	1,876 (73.7)	176 (6.9)	55 (2.2)	48 (1.9)	390 (15.3)
2016	2,780 (100)	2,198 (79.1)	195 (7.0)	65 (2.3)	54 (1.9)	268 (9.6)
2017	2,965 (100)	2,471 (83.3)	185 (6.2)	40 (1.3)	43 (1.5)	226 (7.6)

※ () 안의 숫자는 %

4. 상담매체 유형

2017년 상담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 1,389건(36.1%)이 가장 많았고 방송 549건(14.3%), 일간신문 408건(10.6%), 인터넷뉴스서비스 283건(7.3%), 뉴스통신 213건(5.5%), 주간신문 115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매체에 대한 상담은 전년 대비 40건이 증가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에 조정대상매체로 포함되지 않는 SNS, 유튜브, 팟캐스트 등 유사 미디어가 기타 매체에 포함된다. 언론사가 SNS등에 자사 보도를 매개하는 등 운영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미디어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매체로 인한 피해상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32 | 상담매체 유형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매체 건수	상담 매체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15	2,545	3,064 (100)	468 (15.3)	124 (4.0)	538 (17.6)	18 (0.6)	162 (5.3)	974 (31.8)		115 (3.8)	6 (0.2)	659 (21.5)
2016	2,780	3,821 (100)	471 (12.3)	182 (4.8)	754 (19.7)	11 (0.3)	215 (5.6)	1,223 (32.0)	1 (0.1)	278 (7.3)	16 (0.4)	670 (17.5)
2017	2,965	3,848 (100)	408 (10.6)	115 (3.0)	549 (14.3)	17 (0.4)	213 (5.5)	1,389 (36.1)		283 (7.3)	56 (1.5)	818 (21.3)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상담신청인 유형

2017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보자면 개인이 2,096건(70.7%), 회사 336건(11.3%), 일반단체 218건(7.4%), 지자체 및 공공단체 162건(5.5%), 교육기관 66건(2.2%), 국가기관 57건(1.9%), 종교단체 30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개인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인해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담신청인 중 개인의 상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3 | 상담신청인 유형

(2015. 1.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신청인 유형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5	2,545 (100)	1,655 (65.0)	49 (1.9)	238 (9.4)	369 (14.5)	60 (2.4)	24 (0.9)	150 (5.9)
2016	2,780 (100)	1,856 (66.8)	72 (2.6)	244 (8.8)	336 (12.1)	50 (1.8)	54 (1.9)	168 (6.0)
2017	2,965 (100)	2,096 (70.7)	57 (1.9)	218 (7.4)	336 (11.3)	66 (2.2)	30 (1.0)	162 (5.5)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2017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대상 유형은 원기사 2,769건(69.8%), 매개기사 709건(17.9%), 복제기사 206건(5.2%), 댓글 65건(1.6%), 유사미디어 54건(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매개기사는 2016년 215건에 비해 2017년 709건으로 494건 증가하였고, 복제기사는 2016년 90건에서 2017년에는 206건으로 116건 증가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집계한 유사미디어 항목은 29건에서 2017년 54건으로 25건 증가하였다.

표 34 | 상담대상 유형

(2015. 7. 1. ~ 2017.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대상건수	상담대상					
			원기사	매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기타
2015	1,357	1,545 (100)	1,205 (78.0)	93 (6.0)	49 (3.2)	51 (3.3)		147 (9.5)
2016	2,780	3,166 (100)	2,550 (80.5)	215 (6.8)	80 (2.5)	90 (2.8)	29 (0.9)	202 (6.4)
2017	2,965	3,965 (100)	2,769 (69.8)	709 (17.9)	65 (1.6)	206 (5.2)	54 (1.4)	162 (4.1)

※ () 안의 숫자는 %

※ '유사미디어' 항목은 2016년 5월부터 집계

※ 상담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상담내용 유형

2017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은 2,384건(50.8%), 손해배상 1,337건(28.5%),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 489건(10.4%), 추후보도 110건(2.3%), 형사고소 92건(2.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에 대한 상담은 2015년 210, 2016년 322건, 2017년 48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복제 및 전파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신청인들이 정정이나 반론과 같은 피해구제보도와 함께 문제가 된 기사의 노출이나 검색차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 상담내용 유형

(2015. 1. 1. ~ 2017. 12. 31.)

연도	상담 건수	구분 상담 내용 건수	상담내용 유형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	강제 집행절차	형사 고소	기타
2015	2,545	3,284 (100)	1,799 (54.8)	89 (2.7)	757 (23.1)	30 (0.9)	210 (6.4)	1 (0.0)	120 (3.7)	278 (8.5)
2016	2,780	3,969 (100)	2,054 (51.8)	99 (2.5)	1,030 (26.0)	30 (0.8)	322 (8.1)	5 (0.1)	134 (3.4)	295 (7.4)
2017	2,965	4,692 (100)	2,384 (50.8)	110 (2.3)	1,337 (28.5)	14 (0.3)	489 (10.4)	2 (0.0)	92 (2.0)	264 (5.6)

※ () 안의 숫자는 %

※ 상담내용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6년 4월부터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에 '복제기사·댓글 삭제' 포함

제3절 평 가

2017년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2016년과 비슷한 92점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조사 중 상담 관련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90점대 초반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담이용자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86점으로 전년 대비 1.5점 상승하였다.

이는 상담실무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신청인들에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단계에서 원 보도 이외에 블로그나 카페 등의 펌글, 댓글 또는 유사미디어로 인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파악하여 상담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상의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의 조정과정에서 SNS 등에 복제 또는 전파된 기사로 인한 피해도 함께 다루어 해당 언론사가 관리하는 SNS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신청인들의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사례를 유형화하고 신청예문 및 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정리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상담 체계 및 디지털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접수 체계를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제1절 개 요

2017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의 내실을 다지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꾀했다.

언론중재아카데미는 크게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분쟁해결 전문연수〉 등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공무원, 기업 임직원, 법조인, 학생 등을 직접 찾아가 언론피해 예방 방안 및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2017년 총 251건 실시했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수년간의 수요층 개발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에 힘입어 연간 신청건수가 250건을 웃돌 만큼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자유학기제 실시,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 전국 인터넷 학부모 모임을 통한 홍보 등으로 교육실시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실시 건수는 총 131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위원회는 청소년의 연령과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해 기본 프로그램, 4~6시간에 걸친 심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2~3일간 진행됐던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과 일부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압축·편성해 1일 과정으로 진행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언론인 워크숍을 경기(양평), 경남(부산), 전남(광주), 경북(안동) 등 전국 4곳에서 개최해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7년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은 총 439회 실시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16년의 성과를 웃도는 수치이며,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3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36 | 2017년도 교육 실시현황

(2017. 1. 1. ~ 12. 31.)

구 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연수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계
언론인		26	4	—	30
공무원 등	국가기관/지자체	46	2	—	48
	교사/교직원	75	9	—	84
	군/경/소방관	32	11	—	43
	공공기관/공기업	8	1	—	9
(예비)법조인		4	5	—	9
기업 임직원		6	6	—	12
학생	대학생	27	7	—	34
	중고생	25	1	91	117
	초등학생	2	—	40	42
일반인		—	6	—	6
기타		—	5	—	5
계		251	57	131	43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17년 위원회는 총 251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61회, 학생 54회, 언론인 26회, 기업 임직원 6회, (예비) 법조인 4회 순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다소 건수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협의회, 솔로몬 로파크 등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 간 업무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250건을 상회하는 교육 건수를 기록하였다.

표 37 |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15. 1. 1. ~ 2017.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공무원 등	(예비) 법조인	기업 임직원	학생	일반인	기타	계
2015		61 (1,597)	105 (6,255)	4 (58)	10 (657)	74 (4,293)	1 (15)	—	255 (12,875)
2016		38 (1,250)	167 (10,723)	4 (47)	8 (160)	46 (2,335)	—	—	263 (14,515)
2017		26 (616)	161 (7,758)	4 (221)	6 (139)	54 (2,424)	—	—	251 (11,158)

※ ()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권 관련 소양을 높이는 한편, 언론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전국 10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서 총 131차례 실시해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총 2,25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개최한 적 없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에서 오픈형 프로그램 3회, 단체형 프로그램 2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청소년 교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대상의 오픈형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증설했다. 2016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채널A 등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위원회에서 인격권 등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언론사 견학 등을 통해 언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분쟁해결 전문연수

위원회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공무원, 교원, 대학생, 언론인, 법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기획, 운영해온 연수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각각의 교육대상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 연수, 고교생 연수 등 신규연수를 개설해 교육대상을 넓혔다. 변호사 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으로 인정받았으며, 최신 언론법제 및 민·형사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 수강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연수의 전문성을 높였다.

가.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홍보과정)은 효과적인 언론홍보 방안 습득, 오보 등 언론 대응능력 함양 및 급변하는 언론환경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업 또는 기관의 홍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위원회는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춰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나누어 운영했던 홍보과정을 2017년부터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대응 방법’ 등 주제별로 나눠 진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 다양해진 교육 수요에는 더욱 유연하게 대응했다. 위원회 강의실에서 진행했던 홍보과정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연수로 전환 실시하고, 교육 콘텐츠도 보완했다.



[제2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비고
제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2. 17.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35명	
제2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3. 23.	대전 정부출연기관 홍보담당자	27명	
제3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3. 29.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18명	
제4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4. 12.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29명	
제5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9.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담당자	43명	
제6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16.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21명	
제7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30.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26명	
제8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24.	경찰관	60명	
제9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26.	경찰관	57명	
제10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1. 10.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21명	
제1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1. 30.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등	21명	

나.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위원회는 ADR 기구 임직원, 상담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도 교육대상으로 삼아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기존에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운영했던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은 2017년 수강자의 수준과 관심주제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제별 연수를 편성했다.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은 상담업무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악성 민원인 대응 및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사례를 재구성해 교육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주제로 조별 토론과 역할연기(role-play) 활동을 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교육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비고
제1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4. 3. / 5. / 7.	일반인	20명	일반
제2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5. 12.	"	22명	일반
제3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5. 23. / 25.	"	21명	심화
제4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10. 16.	"	22명	일반
제5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10. 31. / 11. 2.	"	20명	심화
제6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11. 17.	"	18명	심화

다. 분야별 연수

1)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공보담당자 등이 다양한 공공갈등 상황을 효과적이고 신속,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 분야 전문가, 분쟁해결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섭외해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공무원 연수	5. 18. ~ 5.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17명
제2차 공무원 연수	9. 7.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36명
제3차 공무원 연수	10. 16.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42명
제4차 공무원 연수	10. 23.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42명
제5차 공무원 연수	10. 25.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53명
제6차 공무원 연수	10. 30.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37명

2) 교원 연수

위원회는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서울(4회), 부산(2회), 광주(2회)에서 교원직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사, 교육연구사, 전문상담사 등 교육 참가자 157명에게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고 오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강자들은 학교폭력 등 갈등상황에서의 분쟁조정의 의미와 역할, 실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조정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원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인원	학교분류별 연수자 인원			
			초	중	고	기타*
제1차 교원 연수	1. 4. ~ 1. 6.	19명	10명	1명	8명	
제2차 교원 연수	1. 9. ~ 1. 11.	19명	4명	5명	9명	1명
제3차 교원 연수	1. 11. ~ 1. 13.	20명	15명	3명	1명	1명
제4차 교원 연수	1. 18. ~ 1. 20.	19명	11명	5명	2명	1명
제5차 교원 연수	7. 26. ~ 7. 28.	11명	5명	1명	2명	3명
제6차 교원 연수	8. 2. ~ 8. 4.	22명	13명	2명	7명	
제7차 교원 연수	8. 7. ~ 8. 9.	25명	13명	3명	6명	3명
제8차 교원 연수	8. 9. ~ 8. 11.	22명	11명	7명		4명

* 특수학교 및 종합학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연수자

3)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마다 1회씩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법조인 연수는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으로 언론 법제와 분쟁조정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적 강의, 조정심리 참관, 모의 조정 및 모의토론회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2. 6. ~ 2. 17.	1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7명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	8. 7. ~ 8. 18.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8명

4)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2017년 7차례에 걸쳐 대학생 총 17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부산과 전북 지역에서도 각 2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대학 학보사나 신문방송학과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개방하는 서울 오픈형 교육을 2회 실시했다.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연수	2. 23.	성균관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22명
제2차 대학생연수	4. 28.	부경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16명
제3차 대학생연수	7. 12.	부산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13명
제4차 대학생연수	7. 21.	전국 대학생 등	21명
제5차 대학생연수	7. 31.	전국 대학생 등	21명
제6차 대학생연수	10. 30.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생	40명
제7차 대학생연수	11. 15.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생	40명

5) 외국인 연수

위원회는 각국에서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연수를 4회 실시했다. 외국인 연수에서는 위원회의 다양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우리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1차 외국인 연수]

[외국인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외국인 연수	3. 30.	태국인권위원회 관계자	18명
제2차 외국인 연수	8. 28.	일본 대학교수 등	4명
제3차 외국인 연수	8. 31.	태국 KPI 교수, 수강생, 직원 등	48명
제4차 외국인 연수	10. 31.	외국 언론인	9명

6) 기관위탁 연수

위원회는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국방정신전력원의 군과 미디어 과정,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및 공보전문 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기관위탁 연수를 총 5회 진행했다. 2017년 합동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기관위탁 연수를 각 1회 진행했다.

[기관위탁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기관위탁 연수	6. 20.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60명
제2차 기관위탁 연수	6. 29. ~ 6. 30.	국방정신전력원 군과 미디어과정 교육생	16명
제3차 기관위탁 연수	9. 14. ~ 9. 15.	국방대학교 공보전문 과정 교육생	23명
제4차 기관위탁 연수	11. 13. ~ 11. 14.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08명
제5차 기관위탁 연수	11. 27. ~ 11. 28.	합동참모대학 교육생	120명

7)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각종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언론인의 교육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지역언론사와 군소 인터넷언론사의 대표 및 기자를 대상으로 양평(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남), 안동(경북)에서 총 4회에 걸쳐 지역언론인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위원회의 지역언론인 워크숍은 언론취재보도실무와 언론분쟁예방 등을 주제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SNS 활용전략, 구글틀을 활용한 보도 등 시의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3. 16. ~ 3. 17.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22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8. ~ 6. 9.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19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6. ~ 11. 17.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42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2. 8.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20명

8) 변호사 연수

2017년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에게 교육 연수 시간을 인정받도록 하는 변호사 연수를 신규 개설했다. 3회 모두 정원이 조기 마감된 변호사 연수는 미디어 트렌드에 관한 최신 언론 판례를 포함시켜 커리큘럼 면에서도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변호사 연수는 위원회 교육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언론조정 및 언론법제 등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호사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인원
제1차 변호사 연수	12. 1.	31명
제2차 변호사 연수	12. 8.	32명
제3차 변호사 연수	12. 15.	26명

9) 고교생 연수

위원회는 2017년 고교생 연수를 신규 편성했다. 고교생 연수는 기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인격권 및 언론피해구제 교육 강의와 언론인 특강을 결합한 신규 연수로, 언론 분야나 갈등해결 분야에 관심 있는 고교생에게 한층 심화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고교생 연수 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고교생 연수	12. 31.	한가람고등학교 교지 편집부 기자	14명

4. 교육콘텐츠 개발

가.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2017년 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콘텐츠를 별도 제공함으로써 교육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청소년용 교육교재를 제작했다. 기존 일반인용 교재보다 알기 쉬운 용어와 삽화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의 눈높이에 맞추므로써 청소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청소년용 교육 교재]

둘째,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했다. 언론인, 교사, 홍보담당자, 군인 및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등 각 교육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작

성, 활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각 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모의조정 사례를 선정하여 롤플레이의 현장감을 살렸다. 특히 중·고교생의 흥미와 교육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도전 골든벨’과 ‘기사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교육 대상에 따라 차별화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셋째, 시의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위원회 심의사례와 선거보도 관련 판례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또한 언론관련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위원회 조정사건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여 교육 자료의 시의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나.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위원회는 2015년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한 이래 교육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고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2017년 위원회는 집적된 교육 콘텐츠를 웹하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강사진은 교육 목적에 충실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스피치 전략 등 전문 과정을 이수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했다.

제3절 평 가

위원회 교육사업은 질적·양적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분쟁해결 전문연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등의 교육콘텐츠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완·개발했고, 교육과정 역시 수요자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15,209명이 참여한 439회의 교육을 진행해 종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전년도 437건을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한 해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기존 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 및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변호사연수 등 새로운 수요도 창출했다. 또한 일부 분쟁해결전문연수의 경우 기존 일반 및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보도자료작성법, 언론대응법 등 세부 주제별로 제공해 일반인 수강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둘째, 지역교육 활성화로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지역언론인 워크숍을 경기, 경북, 전남, 경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해 언론인 교육에서 비교적 소외된 지역 언론

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지역으로 이전한 합동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 대전 연구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세 지역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연수를 전북에서 2회 추가 실시했다. 기존 대학생 연수는 각 대학 학보사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해 왔던 것에 반해, 금년에는 지역의 대학생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연수를 2회 실시하였다.

셋째,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유지를 꾀했다.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전국 군·경·소방서 등과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그동안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실시한 바 없던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해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 결과 각종 분쟁해결 전문연수 프로그램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8%,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3.8%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수요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8년에도 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위원회는 이용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초에 확정 가능한 연수 일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해 교육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연수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 교육생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대상별 특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SNS 등 최근 급부상한 디지털미디어 이슈에 관해 강의할 수 있는 강사풀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이슈에 정통한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강사풀을 확장하고자 한다. 비교적 교육기회가 적은 지역 언론사에게도 관련 이슈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보도기준, 인격권 침해사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무소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서울의 교육운영 부서와 지역 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무소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기획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담당자들은 교육기획 등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운영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려 한다. 또한 수강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미디어 및 법제 이슈들을 빠르게 좇아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이끄는 등 미디어 법제 분야의 발전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 학술행사,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와 법제 관련 이슈들을 발굴해 점검했고,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미디어와 기술의 결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인격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에서는 다양한 설득 이론과 함께 각국의 주목할 만한 갈등해결 사례들을 검토했다.

또한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는 위원회 주요 조정사례와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하였고, <2016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는 언론 및 인격권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결을 수록해 실무적·학문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통해서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과 이에 따르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호라는 권리의 충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뉴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규제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동향을 파악, 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81년부터 계간 <언론중재>를 발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언론중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관련 주제들을 시의성 있게 다루는 한편, 기존의 언론법적 쟁점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언론중재>의 특집 기획 코너인 'Focus on Media'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짜뉴스 문제, 제19대 대선 선거보도 관련 쟁점, 언론사의 소셜 계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저널리즘 윤리 문제, 소셜 플랫폼 규제 동향과 쟁점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의 미디어 활용 현황,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포털의 뉴스서비스, 미디어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스피커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건 속 법률' 코너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사법보도 문제, 학문적 비평의 허용범위와 한계, 성범죄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언론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언론법적 쟁점을 담았다. 또 '주목할 만한 해외 법제(판결)' 코너 및 해외 통신원 제도를 통해 독일의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법안, 일본의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 유럽인권재판소의 블로그 댓글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판결, 미국의 성범죄자 소셜 미디어 접근 규제에 관한 판결 등 해외의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판결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였다.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7년 봄호 (통권 142호)	[Focus on Media: 사이버공론장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1) [진단]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두 가지 고찰 (김익현) (2) '페이크 뉴스'와 저널리즘의 책무 (김준식) (3)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황창근) [사건 속 법률] 국정농단 사태, 태블릿PC 보도와 법적 문제 (원혜욱)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불길한 미래 - 디지털 네이티브와 뉴스 (조영신)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일본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동향 (서보건)
2017년 여름호 (통권 143호)	[Focus on Media: 대선보도가 남긴 과제] (1) [집중점검] 대선보도 팩트체크 어떻게 했나 (최지선) (2) 맞춤형 뉴스 소비 시대의 선거보도 (정일권) (3)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박민규) (4)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어떻게 할까?: 선거방송토론 진단과 대안 (구교태) [사건 속 법률]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본 사법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룡)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검색과 인공지능 결합한 포털의 변신 (이성규)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블로그 댓글에 대한 블로그 운영자의 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Pihl v. Sweden 사건 평석 (김현귀)
2017년 가을호 (통권 144호)	[Focus on Media: 웹 3.0시대의 저널리즘 윤리] (1) 소셜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 역할과 과제 (최진순) (2) 실시간 검색어와 디지털 낙인, 무엇이 문제인가 (윤성욱)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윤리 (이민규) [사건 속 법률] 학문적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법리와 쟁점 (이승헌)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미디어 스타트업의 핵심 역량 - 멀티 플레이어 (박상현)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성범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접근 규제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 (강승식)
2017년 겨울호 (통권 145호)	[Focus on Media: 소셜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과 규제 쟁점] (1)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 SNS發 오보의 원인과 대책 (김사승) (2) '좋아요'로 공유되는 범죄영상 - 소셜 플랫폼을 통한 불법유해콘텐츠 유통실태와 쟁점 (홍남희) (3) 법적 규제의 중심에 선 소셜 플랫폼 - 해외의 소셜 플랫폼 규제 논의와 동향 (최은경) [사건 속 법률] 성범죄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어떻게 막을까 (이진아)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AI 스피커가 바꾸는 일상 (채반석)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주요 내용과 판결 동향 (배상균)

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을 둘러싼 다양한 언론법제 관련 현상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하게 위해 지난 2015년 창간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기존 연 1회 발간에서 2017년부터는 연 2회 발간으로 발간횟수를 확대했다.

2017년 3권 1호에서는 “뉴스 플랫폼 다변화와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디지털을 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와 뉴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이용되

는지,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이 미디어 법제와 인격권 관련 논의에 어떤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3권 2호에서는 “기술주도 미디어 시대와 인격권”을 주제로 삼아, 미디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인격권 이슈를 점검해보고 그 해결책까지 모색해보는 논문들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게재하였다. 아울러 표현에 있어서의 위축효과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연구논문과 더불어, 정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평식도 함께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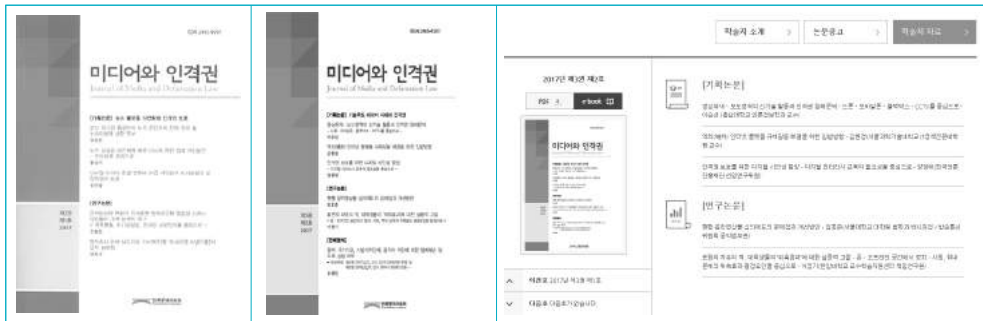
[2017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3권 제1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양승찬	분산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의 전파 경로 및 뉴스이용에 관한 연구
	황성기	뉴스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신문법을 중심으로 -
	정다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연구 논문	우형진	온라인상의 부정적 의사표현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계획행동, 자기결정성, 온라인 규범인식을 중심으로 -
	양재규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채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2017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3권 제2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이승선	영상취재보도영역의 신기술 활용과 인격권 침해문제 - 드론·모바일폰·블랙박스·CCTV를 중심으로-
	김현경	역외(域外) 인터넷 플랫폼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양정애	인격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정기	표현의 자유의 적, 대학생들의 ‘위축효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차사회, 학내 문제의 위축효과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
판례 평석	유제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4.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은 미디어와 인격권에 관한 다채로운 학술적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대학도서관, 언론 및 법학 관련 연구소와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 학술지 논문 전문을 공개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및 제2호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홈페이지
ISSN 2465-9460(online)

다. 계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 모색과 위원회 조정 실무의 충실한 실제적·이론적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를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에도 총 4회에 걸쳐 설득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 사례 및 각국의 갈등해결 모델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정의 실제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진행하였다. 위원회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는 언론분쟁조정 실무자인 중재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회 교육콘텐츠로도 활용해 각급 단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 정부부처, 법원(조정센터 포함) 및 검찰, 법학전문대학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유관기관 및 학회, 갈등조정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7년 봄호 (vol. 22)	1. 순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초(超) 설득'의 심리학적 기제 (김재휘) 2. 설득 상대방의 유형 판별과 설득전략 (김종명) 3. 배심원을 향한 설득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정과 변론을 중심으로 (문일환) 4. 매체 융합의 시대, 영국 ADR의 대응과 과제 (최은경)
2017년 여름호 (vol. 23)	1. 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모색 - AFIR 대화모델을 중심으로 (조예스터) 2. 로베스피에르의 두 얼굴 - 사형제 폐지 연설과 루이 16세 처형 연설 (김헌) 3. 조정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조직 내 갈등해결 코칭/컨설팅에 대한 소개 (장성원) 4. 민관 거버넌스협치 사례로 보는 공동체 갈등에의 접근 (이은숙)
2017년 가을호 (vol. 24)	1. 설득 지식 모델의 올바른 이해 (남경태) 2. 위기와 대립 속 설득을 위한 대통령 연설문의 특징 (김병홍) 3. PREP로 주장하고 AREA로 반론하라 (이호철) 4. 공동체 갈등과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합의 - 남아프리카공화국 몽플레(Mont Fleur) 대타협 사례를 중심으로 (박태순)
2017년 겨울호 (vol. 25)	1. 설득에 임하는 대담의 기술 (이호철) 2. 법정변론과 쟁점이론으로부터 유추하는 조정인의 수사법 (하재홍) 3. 스웨덴 갈등해결 시스템의 3대 축 - SOU, 레미스(Remiss) 그리고 알메달렌(Almedalen) 정치박람회 (김형준) 4. 기부를 이끌어내는 모금전문가(Fund-raiser)의 설득 (황신애)

라.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 사건 및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는 위원회가 2016년에 처리한 3,170건의 조정사건과 13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시의성이 있거나 법리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 25건을 선정하여 상세 사항을 수록했다. 청구유형별로 정정보도 사례 6건, 반론 보도 사례 5건, 추후보도 사례 2건, 손해배상 사례 4건,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5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언론분쟁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사건의 목록을 수록했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912건의 언론보도 중 19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로는 사생활 침해 4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건,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고소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각 1건,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2건 등 12건이다.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는 범죄수법 상세묘사 1건, 성 관련 보도 1건, 자살 관련 보도 2건, 마약 관련 보도 1건, 충격·혐오 보도 1건, 기사형 광고 1건 등이다.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E-Book (610면)

마.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와 주요 판결을 담은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언론의 취재·보도 현장에서 언론분쟁 예방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언론 관련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2016년에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210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판결 중 명예훼손 사례 13건, 초상권 침해 사례 1건, 재산권 침해 사례 2건 등 16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판결 7건, 기사삭제청구 등 판결 6건 등 총 29건을 선정,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2. 토론회 개최

가. 토론회

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사건의 재판중계 방송 허용 논란과 사법보도 문제점 등을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법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동욱 교수(동국대 법과대학)가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션 1] 발표를,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가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션 2] 발표를 맡았다.

[세션 1]에서는 권혁중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과 정문식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정토론자로 나섰고, [세션 2]에서는 김양순 기자(KBS 데이터저널리즘팀)와 허진성 교수(대전대 법학과)가 지정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재판 내용을 중계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중계방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의도, 목적을 면밀히 따져 보고 그것에 맞게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적 토론과 비판 측면에서 재판도 공개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다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 가짜뉴스, 유언 비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7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7. 11. 6.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주 제	[대주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 사회: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세션 1]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 발표: 강동욱(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권혁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 - 정문식(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 2]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 장철준(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김양순(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 허진성(대전대 법학과 교수)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등 50여 명

나.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언론이 가지는 신뢰성을 악용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외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국내 입법안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정세훈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는 제1주제 ‘가짜뉴스의 정의 및 해외 대응 현황’에 대한 발제에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는 허위정보에 가깝다고 정의하면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으로서 크게 법적 규제, 자율규제, 팩트체크를 통한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용석 교수(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제2주제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에 대한 발제에서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개정안은 대부분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광엽 YTN 경제부장,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손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 필요성,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가짜뉴스 규제 간의 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7년도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7. 12. 7.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주 제	[대주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사회: 진형해(변호사,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제1주제: 가짜뉴스의 정의 및 해외 대응 현황 · 발표: 정세훈(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제2주제: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 발표: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토론: 윤성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광엽(YTN 경제부장) 최진응(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등 50여 명

다.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9월 14일~15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김동국 수석부장판사(강원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재위원 연수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특강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 사례 연구로 구성되었다.

2017년 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에서는 청렴 관련 법제에 대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중재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조정심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중재위원이 실제 담당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조정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제 이후에는 위원회 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중재위원 연수]

[중재위원 연수 개최현황]

일 자	2017. 9. 14. ~ 15.
장 소	용평리조트 (강원도 평창)
주 제	제1주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특강 · 강사: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 제2주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 사례 연구 · 사회: 김동국 (강원중재부 중재부장) · 발표: 손관승 (서울제6중재부), 한기봉 (경기중재부) · 토론: 진형혜 (서울제1중재부), 이관해 (서울제3중재부) 정연우 (충북중재부), 양원홍 (제주중재부)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43명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언론법제 및 저널리즘 분야의 엄선된 국내·외 단행본, 학회지, 판례집, 18종에 달하는 정기간행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자료 포함) 등을 풍성하게 구비한 전문 자료실을 운영 중이다. 전문 자료실은 언론법제 관련 분야 연구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언론조정실무 및 언론분쟁예방교육, 직원 교양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언론법제 등 관련 분야 신간을 구입해 비치하는 등, 전문 자료실이 중재위원 및 직원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실무와 학술 진흥에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실 보유장서 등록 현황]

(2017. 12. 31. 현재 / 단위: 권)

구 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계
2017년도 신규구입	162	5	167
보유 장서	5,756	365	6,121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활발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제도 대표 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와 대응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의 학술적 성격을 한층 강화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와 언론법 관련 논제들을 시의성 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발간물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법제 관련 다양한 이슈와 논점들을 발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언론법제 및 각종 미디어 이슈에 관한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언론법제 연구 및 학술 기반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언론법제 분야 학술 진흥, 국민 피해구제와 인격권 보호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매년 언론조정·중재제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관련 제도 및 위원회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정책 목표 및 비전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인을 대상으로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및 방법’, ‘심리 전/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의 차원을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심리 전/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으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밖에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에 대한 견해 관련, ‘언론보도 복제기사(원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에 퍼나른 경우) 및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경험’, ‘인터넷기사 수정, 보완, 열람차단 요구 권리 필요성’, ‘기사댓글 규제 필요성’ 문항을 구성해 양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원 친절성’, ‘적극적인 상담’, ‘문제해결 도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수강자에 대하여 ‘주제 및 내용’,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강사의 성의 및 태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2017년 이용만족도 조사는 (주)리서치랩을 통해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상담 및 교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별로 온라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신청인 및 피신청인), 전화조사(상담이용자), 현장조사(교육수강자)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물은 『201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보고서』 책자로 발간, 전자문서 형태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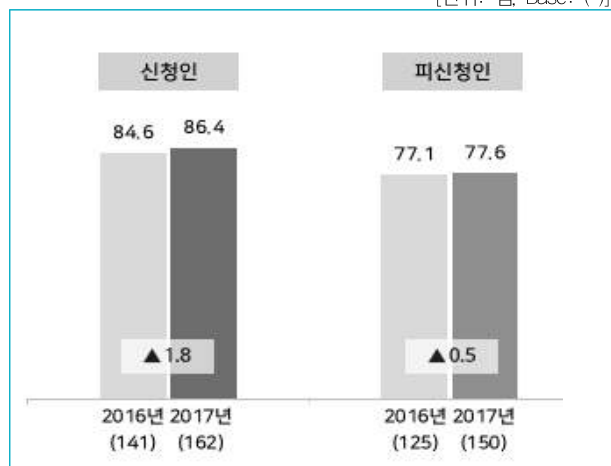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17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86.4점으로 2016년 대비 1.8점이 상승하였고,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7.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이 상승, 신청인의 상승폭이 피신청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91.3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8.6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8.0점) > ‘신청절차 및 방법’(86.0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82.3점)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3.2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1.2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2.5점) 순이었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각 차원별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상담원 친절성’이 94.2점,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가 90.9점, ‘조정조서, 결정서 등 신속한 송부’가 90.5점, ‘직원의 능숙한 업무처리’가 90.4점, ‘심리진행의 적극성’이 85.4점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지참물에 대한 안내’가 88.7점, ‘담당직원과의 접촉 용이성’이 84.3점, ‘심리진행의 적극성’이 79.9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차원별 세부 항목 대부분이 2016년 대비 상승하였다.

이 밖에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의 97.5%, 피신청인의 62.0%가 ‘그렇다’고 응답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기존의 정정·반론·손해배상·추후 보도청구 이외에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피해구제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기사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97.5%, 피신청인의 6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양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서비스를 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기사댓글 구제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불필요
신청인	72.2	25.3	1.9	0.6	0.0	97.5	0.6
피신청인	22.7	41.3	24.7	8.7	2.7	64.0	11.4

[인터넷 기사 수정, 보완, 열람차단 요구 권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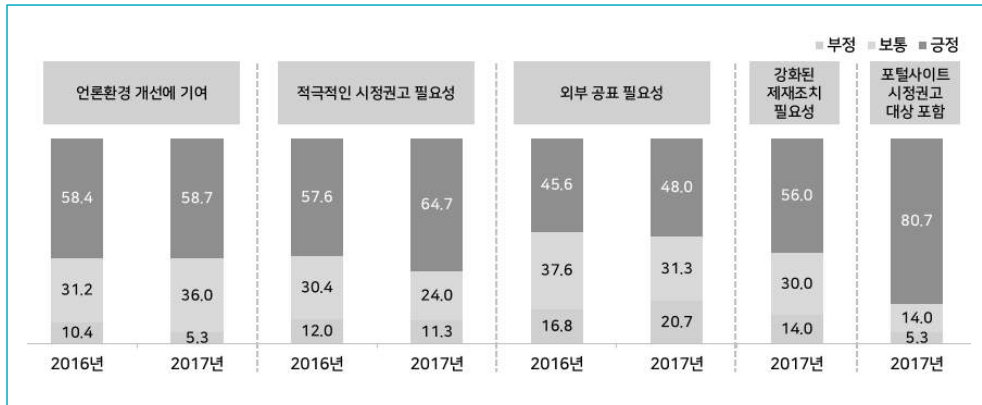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불필요
신청인	71.6	25.9	1.2	0.0	1.2	97.5	1.2
피신청인	22.7	39.3	21.3	14.0	2.7	62.0	16.7

시정권고 제도와 관련, 피신청인의 절반 이상(56.0%)은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법익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는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등)를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대다수인 80.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의견(피신청인)]

[단위: %,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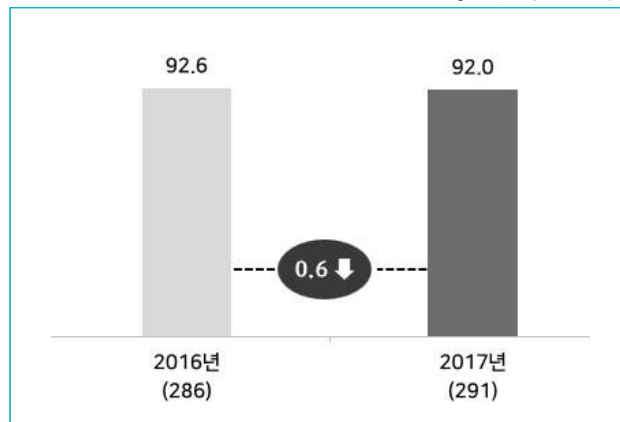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92.0점으로, 2016년(92.6점) 대비 0.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 경청자세’(94.3점) > ‘상담원 친절성’(93.1점) > ‘적극적인 상담’(92.9점) > ‘상담내용 신뢰성’(92.1점) > ‘신속한 상담’(91.6점) > ‘문제해결 도움’(88.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상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상담이용자는 모든 항목에서 90점대 초반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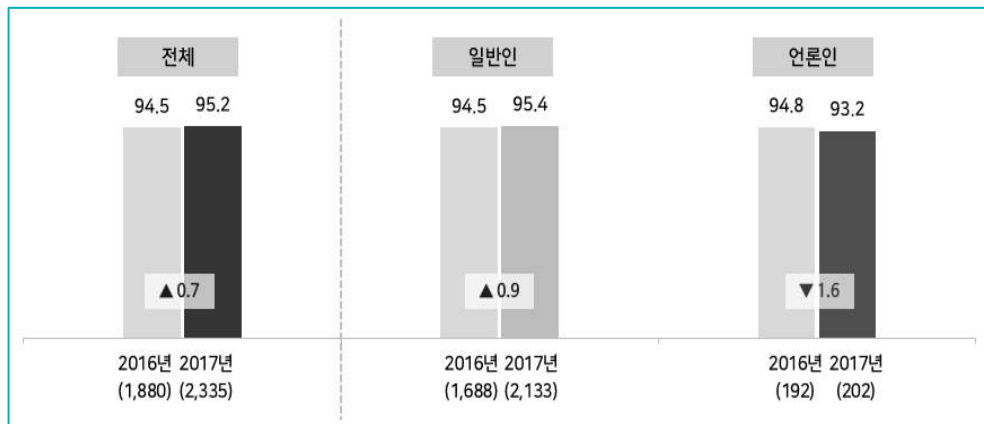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95.2점으로 2016년(94.5점) 대비 0.7점 상승하였다. 일반인 수강자 만족도는 95.4점, 언론인 수강자는 93.2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언론인 수강자의 만족도가 일반인 수강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일반인 수강자의 만족도가 언론인보다 2.2점 높았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8.1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5.9점) > ‘교육 자료의 충실성’(95.5점) > ‘제도에 대한 이해’(94.3점) > ‘주제 및 내용’(93.4점) 순이었다. 교육수강자의 항목별 만족도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의 성의 및 태도’는 98.1점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제3절 평 가

2017년도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조정·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교육수강자 종합 만족도는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상담이용자는 소폭 하락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모든 차원에서 20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부의 심리진행’을 제외한 ‘심리 전 절차 안내’와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업무 효율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은 2016년에 이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를 이용한 신청인 다수가 포털의 복제기사(원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에 퍼나른 경우) 및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기사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대부분(97.5%)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제기사·댓글 실태 및 피해구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언론 피해구제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당수가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상담과정’ 및 ‘심리 전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사건처리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강화, 심리일정 조율에 있어서 당사자 일정의 고려 및 신청인·피신청인 대기공간 분리 등 조정·중재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실무적 검토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5장

홍보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위원회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홍보효과 확산을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대외홍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위원회 관련 시의적절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했다. 업무와 연관된 전문콘텐츠를 제작·발행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일상·공감콘텐츠를 적절히 안배하여 이용자층을 확대했다. 또한 공모전 개최, 대학생 기자단 운영, 중·고생 대상 박람회 부스 참여 등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활동을 지속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익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 전광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실시했으며 웹드라마 제작, 온라인 광고 집행을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광고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매월 5천부씩 제작·배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언론중재법 NOW’, ‘언중노트’, ‘언론법 이모저모’ 등의 코너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들이 기고한 ‘클로즈업’, ‘심리학 브런치’, ‘옛 그림과 차 한 잔’ 등 연성화된 콘텐츠를 통해 독자층을 넓히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이 한국사보협회 주관 <2017년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정기간행물 협동조합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국 시·도·군·구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법원, 대학,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 <언론  사람>은 지면 발행부수가 2015년 12,000부, 2016년 8,000부에서 2017년 5,000부로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강화하게 되었다. <언론  사람>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한편, 뉴스레터 형태로도 제작하여 매월 약 4,000명의 수신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발송하는 등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2017년 발행 <언론  사람>]



[〈2017 커뮤니케이션 대상〉 정기간행물협동조합 이사장상]

2. 위원회 매체 광고 실시 현황

위원회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위원회 인근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옥외매체 광고를 실시하였다. 작은 노출 빈도와 높은 주목도를 고려, 서울신문사 뉴스 전광판 광고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2호선 을지로입구역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매체광고 집행내역]

매 체 명		집행기간	비고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4. 19. ~ 7. 18. 9. 20. ~ 12. 19.	12m×9m, 양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1호선 시청역	10. 16. ~ 12. 15.	벽면광고(2.5×1.6) +상단광고(3.7×0.7)
	2호선 을지로입구역	10. 16. ~ 12. 31.	벽면광고(2.5×1.6) +스티커광고(1×0.3)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화면]

한편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를 집행했다. 페이스북 광고에는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UCC 공모전 수상작, 웹드라마 등의 동영상 콘텐츠가 활용됐다.

[온라인 광고 집행내역]

구 분	집행기간	노출 횟수	사용 영상
6월	2017. 6. 1. ~ 6. 30.	133,056	인포그래픽
7월	2017. 7. 1. ~ 7. 31.	141,919	인포그래픽
8월	2017. 8. 1. ~ 8. 31.	224,334	공모전 수상작
9월	2017. 9. 1. ~ 9. 30.	110,653	공모전 수상작
12월	2017. 12. 13. ~ 12. 17.	679,040	웹드라마

3. 온라인 기반의 홍보 활동 강화

위원회는 2030세대의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통한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확대를 위해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를 제작해 배포했다.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는 위원회의 기능을 소개하되 2030세대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으며, 페이스북·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배포됐다. 2017년 12월 페이스북 기준 1화 37,446회, 2화 33,788회, 3화 55,530회, 4화 24,631회, 5화 45,891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위원회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 제작방영]

또한 위원회는 ‘공감 블로그’로 명명된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최신 미디어 이슈, 언론법제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카드뉴스·모션그래픽·인포그래픽 등 온라인 홍보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해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17년 위원회 블로그 조회수는 월평균 18,336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는 월평균 10,442건을 기록했다.

[월별 블로그 방문자 수 및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2017. 1. 1. ~ 2017. 12. 31.)

구 분	블로그 조회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1월	15,391	7,339
2월	13,622	7,789
3월	12,806	8,288
4월	15,837	8,638
5월	20,728	8,984
6월	18,932	10,386
7월	12,091	11,669
8월	13,367	11,915
9월	20,133	12,139
10월	18,574	12,398
11월	42,879	12,658
12월	15,666	13,092

4. 대국민 대상 참여 홍보 활동 전개

위원회는 2017년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을 처음으로 구성·운영했다. 상반기에는 제1기 SNS 기자단 10인을 선발하여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제1기 기자단 중 5인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대학(원)생 기자단은 위원회의 제도나 교육, 저널리즘 이슈에 대해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작성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위원회 블로그·페이스북을 통해 게재되어 예상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운영을 실시하여 대학(원)생의 참여를 통해 참신한 위원회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확산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가제2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운영]

또한 위원회는 2016년 제1회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반인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홍보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은 내부 심사회의와 네티즌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했는데, 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실시된 네티즌 투표에서는 약 1,000여 개의 댓글이 집계되는 등 공모전 개최, 심사, 수상작 발표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14편 응모작 중 7편(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공모전 수상작은 청소년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대외홍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등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됐다.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UCC) 개최]

아울러 <2017 미래방송인 박람회>에 참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원회 홍보를 실시했다. <체험, 언론조정중재 바로알기>와 <도전, 나쁜 기사 바로잡기> 부스를 마련하고 인격권의 유형과 위원회를 통한 언론피해구제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박람회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2017 미래방송인 박람회> 부스 참여]

5.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토론회 개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과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보도자료 16건을 배포하여 총 219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7년에는 미디어 전문지 등 언론사별 미디어 담당기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원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홍보계기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2015년도에 구축한 디지털 전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원회 역사 기록과 업무 홍보에 활용했다. 사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료의 정의, 선정 기준 및 보관 방법을 명료히 하였으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행물 5건, 기타물품 3건, 디지털 파일 17건을 사료로 지정하였다.

제3절 평 가

2017년도 위원회 홍보는 참여와 공감 확산에 집중했다. 공모전, 기자단 운영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 방식과 비교하여 인지의 정도와 지속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역시 대중과 잦은 접촉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평판에 관해 청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광고 집행, 콘텐츠 제작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홍보 환경에서 어떤 매체를 선택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2017년도 위원회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구별하여 각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에 노출되는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점으로 옥외광고 매체를 선택하였으며, 콘텐츠 역시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 광고를 송출하였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젊은 연령대의 대중에게 소구하고자 감각 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10분 내외의 짧은 러닝 타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웹드라마 〈오보찾아 흥신소〉를 제작하여 20~30대의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홍보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위원회 관련 다양한 정보와 정책 이슈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제6장

기타 주요활동

제1절 개 요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위원회는 2017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언론 관련 현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언론평의회와 주요 언론사를 방문했다. 이번 시찰에서 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국의 언론 관련 불만처리절차 현황을 살펴보고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호주 ABC 방송사와 뉴질랜드 TVNZ 방송사 및 뉴질랜드 헤럴드를 방문해 각국의 최신 언론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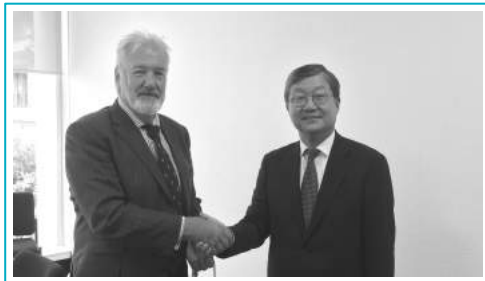
호주와 뉴질랜드는 언론 자유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³⁾로 분류되며, 언론피해구제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교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시스템은 해외에는 생소한 제도였으며, 지난 2001년 호주 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APC) 방문시에는 APC 관계자가 한국의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3)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2017년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조사 결과, 180개국 중 호주는 19위, 뉴질랜드는 13위로 나타났다. (<https://rst.org/en/ranking>)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APC 존 펜더(John Pender) 사무처장은 한국의 언론중재제도가 조정시스템과 사법제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는 등 우리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 국경 없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과 언론 피해구제제도에도 점차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도 해외 교류를 통해 각국의 언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과 진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호주 언론평의회 방문]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방문]



[뉴질랜드 TVNZ 방송사 방문]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사 방문]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현황]

시찰자 및 수행자	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 양인석 위원장 - 황정근 대안총복사무소 소장 - 이윤정 예산회계팀 직원	2017. 11. 8. ~ 2017. 11. 17.	호주	- 호주신문평의회 - ABC방송사
		뉴질랜드	-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사 - TVNZ 방송사

2. 국제컨퍼런스 협력

위원회는 2017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회 미디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The 3rd World Conference on Media and Mass Communication, MEDCOM 2017)’와 11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7년 푸단대학교 국제컨퍼런스(2017 Fudan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각국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해외 언론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

[국제컨퍼런스 참가 현황]

구 분	내 용	
행 사 명	제3회 미디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2017년 푸단대학교 국제컨퍼런스
일 정	2017. 4. 18. ~ 2017. 4. 22.	2017. 11. 19. ~ 2017. 11. 22.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국 상해
주 제	정보, 설득, 관계와 권력 -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미래 - 미디어 생태학 및 빅 데이터
참석자	- 서울제8중재부 권혁중 중재부장 - 서울제2중재부 권순택 중재위원 - 서울제6중재부 양승목 중재위원	- 경기중재부 권덕진 중재부장 - 서울제7중재부 이종세 중재위원 - 광주중재부 조동수 중재위원 - 전북중재부 김선남 중재위원

‘정보, 설득, 관계와 권력 -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Information, Persuasion, Relationships and Power: The Many Functions of Media)’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회 미디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에서 8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최신 현안과 연구 경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가짜뉴스와 소셜미디어, 포토저널리즘 등 인터넷 공간과 미디어 분석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와 푸단대학교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미래 - 미디어 생태학 및 빅데이터(Future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Media Ecology and Big Data)’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의 성장에 주목하며, 뉴스의 생산과 소비 경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내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제컨퍼런스 사업을 통해 해외 언론 동향과 미디어 산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리나라의 언론조정 중제도를 해외에 소개, 주요국 언론인 및 전문가 집단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미디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참석]



[2017년 푸단대학교 국제컨퍼런스 참석]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13회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는 2회(전북, 경남),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는 8회, 언론유관기관 간담회는 3회 개최하였다. 지역언론인 간담회는 중재위원과 지역언론인 간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언론 현안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지역 언론의 고충을 듣고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4. 직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위원회는 2016년부터 연간 교육 시간 이수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육 시간 이수는 권장사항으로, 직원 개개인이 자율적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문소양교육·법정의무교육·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교육 등의 사내강의를 실시하였고, 개별 직무능력향상교육·외국어학습 및 연구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위원회가 2017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시청각교육에서 벗어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의 대면강의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건전한 성인식을 함양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법령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내부 집합교육 실시 현황]

구분	날짜	주제	강사
인문 소양	4.14.(금)	스피릿 컨설팅 - 최고의 나로 리셋하라	김필수 (스피릿컨설팅 대표이사)
인문 소양	5.15.(월)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백승권 (백승권글쓰기연구소 대표)
폭력 예방	6.23.(금)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강정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언론 조정 실무	7.7.(금)	언론조정실무연구 I	양재규 (홍보팀장, 변호사)
	7.14.(금)	언론조정실무연구 II	
개인 정보 보호	9.11.(월)	사이버범죄의 양상과 개인정보 보호	이재훈 경위 (서울청 수사1계)
인문 소양	10.13.(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 신문의 생존 전략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폭력 예방	11.10.(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정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소 계	8회		

한편 2016년 제정된 「연구모임 지원기준」에 따라 각 연구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소송법연구’, ‘조정 실무자의 분쟁해결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의 2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발제 및 토론, 도서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모임 활동현황]

연구모임명	활동내용
소송법연구	- 민·형사 소송 절차 및 법학 이론 정리 - 언론소송개관 및 법원절차와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와의 비교 검토
조정 실무자의 분쟁해결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 조정 실무자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견 교류 - 설득 및 협상 관련 독서토론, 영화 감상

5. 사회공헌활동

위원회는 2017년 7월 아름다운 가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과 함께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많은 직원들의 나눔 참여로 도서, 잡화, 의류 등 124점을 기증할 수 있었다. 12월에는 지진피해로 신음하는 포항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위 성금은 이재민들의 주거 및 생활 보조 등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같은 달,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직원들이 직접 반죽하여 구운 따뜻한 빵은 당일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12월 28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아동복지기관이며, 위원회는 재단을 통해 2015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보유한 아동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비를 후원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2017년 사회공헌 활동]

일 자	내 역	지 원 처	지원금액(원)
2017. 7. 24.	물품 기증 (도서, 잡화, 의류 등 124점) 및 기부	아름다운가게	1,000,000
2017. 12. 1.	포항 지진피해 주민 돕기 캠페인 성금 기탁	전국재해구호협회	5,000,000
2017. 12. 5.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500,000
2017. 12. 20.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치료비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34,060



제4부

2018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제 1 장

2018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 요인

1. 위원회 법정업무 현황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7. 13.) 설치·운영 예정
- 지방선거 관련 심의결정건수는 선거를 거둬할수록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선거기사심의결정건수]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10		2011
	16대 총선	3회 지선	16대 대선	17대 총선	4회 지선	17대 대선	18대 총선	5회 지선	재보선	재보선
계	98	56	13	78	80	37	101	178	12	51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8대 대선	19대 총선	재보선	재보선	6회 지선	재보선	재보선	20대 총선	재보선	19대 대선	재보선
계	51	130	8	23	226	4	33	76	3	10	8

- 전년대비 조정신청사건도 소폭 증가하는 등 2013년 이후 연평균 3,000건(일반 사건 기준) 이상 접수 처리

(2013. 1. 1. ~ 2017.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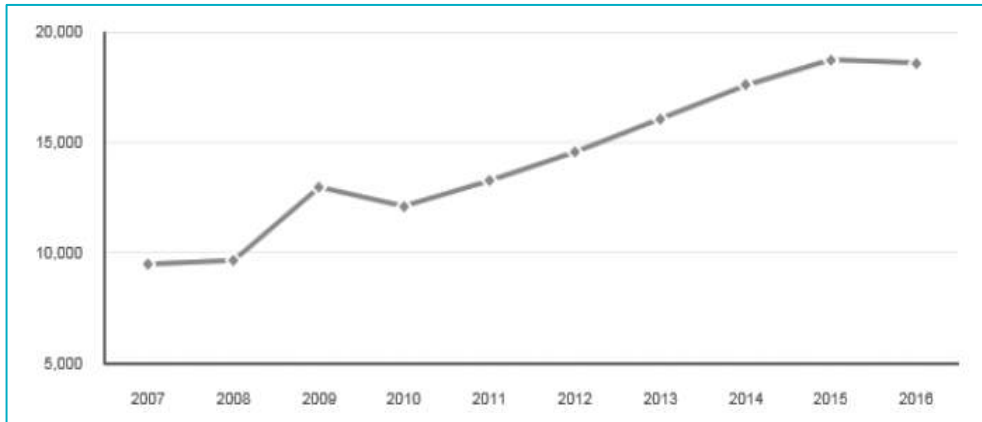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정 처리 건수	전 체	2,433	19,048	5,227	3,170	3,230
	일반사건	2,433	2,931	3,319	3,170	3,230
	서울중재부	1,806	2,159	2,327	2,266	2,371
	비중(%)	74.2	73.7	70.1	71.5	73.4

※ 음영 부분은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1,000건 이상 신청사건)을 제외한 건수임

2. 위원회 법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헌재 2016. 10. 27. 선고 2016헌마 277)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정의규정에서 고용조항이 삭제(2017. 3. 15.)되어 위원회 법정 업무의 대상 매체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기간행물 증가 추이 (2007~2016)]



※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5)

※ 인터넷신문 포함

- 언론매체수의 증가와 함께 언론조정신청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정 권고를 위한 심의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무처 인력 증원 예정

3.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성 논란

- 포털을 통한 뉴스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포털사는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편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뉴스소비의 편식을 부추겨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포털은 위원회 조정대상매체이며, 포털의 시정권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언론중재법 관련 이슈

- 대외적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
-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 중
- 중재위원 위촉권 상향, 재원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 중

5.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에 따른 파급효과 검토

- 2017년 정부는 조직개편안 최소화로 국정운영 안정감을 강화했으나,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헌과 정부조직개편 등에 대한 공론화 가능성이 제기됨
- 이 과정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미디어 관련 소관부서의 개편 가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위원회 법률 및 예산 소관 부처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논의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6. 사회적 투명성 제고 노력 동참

-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2017. 1. 1.)되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
- 한편 위원회는 지난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인사채용 현황에 대해 실지 검사 수검
-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2018년 증원을 앞두고 채용 및 인사 절차에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2장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위원회의 공적 책임과 역할 제고

가. 언론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정심리

- 인터넷 매체의 양적 팽창에 따른 조정심리건수의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정업무 수행 인력 증원
- 중재위원 연수 등을 통해 각종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토론을 실시하고 중재위원 간 조정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중재위원 역량을 강화해 조정심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

나. 언론보도문화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심의 강화

- 인터넷신문의 급증에 따른 시정권고심의대상 확대에 대비, 심의 관련 인적 자원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지면매체 심의 강화를 위해 스크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정권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적 시스템 보완

다. 공정한 6·13 지방선거를 위한 보도환경 조성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고결정문게재 등 선거기사심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재 유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기사심의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보도환경 조성

2.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

가. 인터넷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제도 개선

-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에 의한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국내외의 가짜뉴스 관련 이슈, 포털 규제 관련 동향, 유럽의 잊혀질 권리, 독일 네트워크시행법 등 피해구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적 사안에 대해 지속적 탐색

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연구·홍보 강화

- 디지털 미디어의 흐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발간·학술 사업 추진
-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정책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미디어 특성에 따라 홍보 콘텐츠를 채널별로 다양화하는 이용자 지향의 홍보·교육 시스템 구축

다.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증진

- 위원회 법정업무 수행의 중심축의 하나로써 지역사무소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범위 확대방안 강구
- 지역언론인 간담회, 지역언론인 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 실시를 통해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증진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부 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17년 12월 말 기준)

임원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양인석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변호사
 부위원장 황병선	•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부위원장 송종문	• 중앙일보 부장, 주간, 상무이사 • (현)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감사 이희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감사 민말순	•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창원YMCA 이사장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이 대 연	• 인천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오 성 우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 병 선	•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진 우	• 동아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 대기자 • 뉴스통신이사회 비상임이사
 홍 은 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 희 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류 춘 렬	• 문화방송 시청자위원 • 한국소통학회 회장 • (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양 소 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현)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현)변호사
 진 형 혜	• (현)우정사업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현)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현)변호사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김 영 학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이 태 수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관 해	•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경영기획실장 • 충청일보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	 임 경 록	• 연합뉴스 논설위원, 출판국장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허 은 강	• 인천시 상근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도 성 진	• 중앙일보 사회부장, 논설위원 • 에너지경제신문 편집인 겸 부사장
 신 현 태	• 연합뉴스 논설위원, 전무이사 • (현)한서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양 인 석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변호사
 황 용 석	• (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 (현)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 승 찬	•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 (현)한국언론학회 부회장 • (현)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오 선 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고 연 금	• 수원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홍 중 표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변호사	 장 정 수	• Asiaweek 서울특파원 기자 • 한겨레신문 편집인 겸 전무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성 기 준	• 연합뉴스 논설위원장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손 관 승	• MBC 베를린 특파원, 보도특집 팀장 • (주)MBC 대표이사 사장 • (현)세한대 교수
 김 희 진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 (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 영 성	• 전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북부지원 판사 • (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 보 란	• 주식회사 포스코 과장 • (현)변호사	 장 윤 미	• CBS 방송국 보도국 기자 • (현)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윤 성 식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권 혁 중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종 세	• 동아일보 체육부장 • (현)평창올림픽조직위 자문위원 • (현)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이 혁 주	• 조선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사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안 승 국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이 종 탁	• 경향신문 논설위원, 출판국장 • (현)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한 은 경	• 광고홍보학회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규정발전위원 • (현)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광 범	• 광고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현)변호사
 이 재 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 영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 (현)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부 산 중 재 부		대 구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 종 훈	• 부산고법 부장판사 •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강 동 명	• 대구고법 판사 •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 종 명	• 부산일보 부국장, 논설주간, 이사 겸 주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유 영 철	• 영남일보 편집국장 • (현)계명대 산학인재원 초빙조교수
 김 은 경	• 진주MBC, 부산MBC, 부산KBS 아나운서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 비서관 • (현)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	 조 성 호	•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 (현)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지 영	• (현)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 (현)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상 식	•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 (현)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전 정 속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 (현)변호사	 조 창 학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광 주 중 재 부		대 전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최 수 환	• 광주고법 부장판사 • (현)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방 승 만	•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조 동 수	•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필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송 종 문	• 중앙일보 부장, 주간, 상무이사 • (현)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박 재 우	• 광주고검 항고심사위원 •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현)변호사	 정 교 순	• 대전고검 부장검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변호사
 윤 석 년	• 한국방송학회 회장 • (현)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승 선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현)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 정 민	• (현)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 • (현)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 종 현	•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현)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경 기 중 재 부		강 원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권 덕 진	-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현)수원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동 국	-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송 대 근	- 동아일보 편집국부국장, 논설위원 -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발행인	 김 성 기	- 강원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 기 봉	-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이 관 열	-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 KBS 연구위원 (현)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곽 란 주	- 서울동부지검, 부천지청, 천안지청 검사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현)변호사	 최 영 재	- 연합뉴스 기자, YTN 기자 (현)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 효 정	- 서울동부지검 검사 -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 (현)변호사

충 북 중 재 부		전 북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양 태 경 중재부장	-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 강 회 중재부장	-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 영 일	-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 재 금	- 전북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 주필 -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이사
 정 연 우	-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현)세명대 사회과학대학장, 광고홍보학과 교수	 진 태 호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현)변호사
 이 광 형	-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대전고검 검사 (현)변호사	 김 봉 철	(현)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 (현)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 국 히	(현)변호사	 김 선 남	- 호남언론학회 회장 -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현)원광대 사회과학대학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 남 중 재 부		제 주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정 재 규	-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현)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진 영	- 서울중앙지법 판사 (현)제주지법 부장판사
 민 말 순	-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창원YMCA이사장	 오 상 훈	- KBS제주 해설위원 -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현)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임 영 수	- 서울북부, 부산지검 검사 (현)변호사	 강 문 원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판사 (현)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 (현)변호사
 이 영 동	- 경남신문 논설실장, 편집국장, 상무이사 - 창원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문 윤 택	- 한국광고홍보학회 기획이사 (현)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이 완 수	- 헤럴드경제 국제부장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현)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위원회 연혁

- 1981. 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 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
-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 4. 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
- 1985. 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 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1. 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993. 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 1999. 4. 9. 박영식(제9·10대) 위원장 취임
-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의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2005. 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 4. 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 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 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4. 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 2015. 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2017. 1. 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고시 제2016-9호)
-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제재 유형 다양화
- 2017. 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4. 기구

가. 위원총회

- 1) 구 성
 - 중재위원 90명
- 2) 기 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1) 구 성
 - 중재위원 9명
- 2) 기 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1) 구 성
 - 중재위원 7명

2) 기 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1)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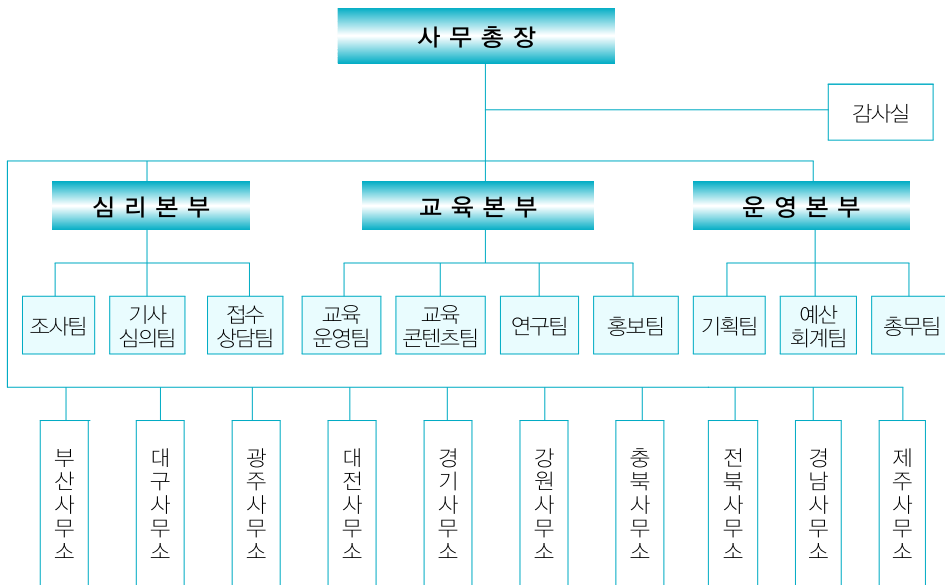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2) 기 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 사무처 기구표



2) 사무처 인원 현황

(단위: 명 / 2017년 12월 말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79	80
현 원	1	78	79

5. 2017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6,317	6,261	56
경상비	경상비	2,275	2,225	50
사업비	심의사업	1,766	1,647	119
	조사연구사업	343	316	27
	홍보 및 교육사업	392	387	5
	소계	2,501	2,350	151
합계		11,093	10,836	257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변재일 의원	2016. 9. 1. 의안번호 2026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중재위원 추천권자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안 제7조제3항) -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안 제8조제2항) -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 -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안 제34조)
노웅래 의원	2016. 9. 5. 의안번호 2155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3호·제4호·5호) -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위원회 재원 충당에 언론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하고, 국가의 필요경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중재위원회의 회계처리,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안을 명문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곽상도 의원	2016. 10. 28. 의안번호 2989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및 제7조) -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 등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주호영 의원	2017. 4. 25. 의안번호 6805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 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안 제17조의2제1항)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
송희경 의원	2017. 8. 4. 의안번호 2008394	-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안 제4조의 4항 신설) -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안 제33조 신설 등)

7. 2017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2016년도 연간보고서	2017. 2. 28.	300부
2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봄호	2017. 3. 1.	500부
3	언론중재 봄호	2017. 3. 30.	800부
4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7. 4. 30.	E-Book
5	국문 홍보책자	2017. 5. 24.	1,000부
6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	2017. 6. 1.	500부
7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7. 6. 30.	1,000부
8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3권 1호	2017. 6. 30.	500부
9	언론중재 여름호	2017. 6. 30.	800부
10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17. 7. 21.	E-Book
11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가을호	2017. 9. 1.	500부
12	언론중재 가을호	2017. 9. 30.	800부
13	「언론조정중재 길라잡이」 리플렛	2017. 10. 27.	1,000부
14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언론인 교육교재)	2017. 11. 30.	3,000부
15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3권 2호	2017. 11. 30.	500부
16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겨울호	2017. 12. 1.	500부
17	201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2017. 12. 15.	200부
18	언론중재 겨울호	2017. 12. 30.	800부
19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각 5,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7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7 Annual Report

인 쇄 일	2018년 2월 26일
발 행 일	2018년 2월 28일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 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